#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계획과 ☎ 032-760-7517)에 갖추어놓았습니다.

2023. 6. 14.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Ⅱ.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 Ⅲ. 주요내용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유예기간의 부여(신설)
    -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고시일(2021.12.30.)부터 조례로 정한 존치 기간(2024.12.30.)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 Ⅳ.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7 61 11	ما ت		면 적(m²	)	ul =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월미	중구 북성동1가	240 100 0		240 100 0	
-	지구단위계획구역	98-53번지 일원	348,108.2	_	348,108.2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	7
	구 분 	기정	변경	변경 후	十/8円(%)	<u> </u>	고
	합 계	348,108.2	-	348,108.2	100.0		
주거	준주거지역	504.9	-	504.9	0.1		
상업	일반상업지역	225,307.2	-	225,307.2	64.7		
공업	일반공업지역	1,221.6	-	1,221.6	0.4		
о H	준공업지역	47,277.4	-	47,277.4	13.6		
녹지	보전녹지지역	67,143.7	-	67,143.7	19.3		
	미지정	6,653.4	_	6,653.4	1.9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_	_	고도지구	고도지구	북성동1가 98-50번지 일원	GL+50m 이하	187,418.4	1984. 8.14. (인고 제770호)	

#### ■ 보호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	_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3,201,054.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593㎡ 포함)	1965. 7.14.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O Hi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4	7,865.2	92,479.8	10	4,366.2	66,743.6	6	638.3	6,719.8	28	2,860.7	19,016.4	
중로	8	4,032.4	65,126.8	6	3,640.4	59,720.8	1	162.0	2,640.3	1	230.0	2,765.7	
소로	36	3,832.8	27,353.0	4	725.8	7,022.8	5	476.3	4,079.5	27	2,630.7	16,250.7	

<sup>※</sup> 연장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 도로 결정 조서

7 H		3	त ५	<u>1</u>	-1 L-	연장	الحالم	Z 7]	사용	주요	최초	n)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중로	1	12	20	국지	1,485 (398.6)	대2-17	중1-138	일반	98-65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1	48	20	국지	2,555 (906.3)	대2-17	대2-17	일반	산2-12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1991-97호
	중로	1	132	20	국지	300	중1-48	중1-138	일반	98-53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1	133	20	국지	245	중1-132	중1-12	일반	98-49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1	138	20	국지	1,485	중1-12	중1-48	특수	98-13	75.5.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1	293	20	국지	305.5	중1-48	중1-12	일반	98-3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중로	2	132	15	국지	162	중1-48	중1-138	일반	98-57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3	131	12	국지	230	중1-48	중1-132	일반	98-290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소로	1	1	10	국지	272	중1-12	북성동1가 97-25	일반	97-1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1	2	10	국지	199.8	중1-132	중1-12	일반	98-22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7 13		;	규 모	!_	키노	연장	-J 7J	スカ	사용	주요	최초	ען די
구분	둥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소로	1	3	10	국지	186.5	중1-132	중2-132	일반	98-326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1	4	10	국지	67.5	중1-138	중1-48	일반	98-6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1	10	국지	60.2	중1-12	소1-2	일반	98-25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2	10	국지	65.7	중1-133	소1-2	일반	98-21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3	8	국지	65.1	중1-138	소1-2	일반	98-25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4	8	국지	65.3	중1-133	소1-2	일반	98-22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5	8	국지	220.0	중1-133	중1-293	일반	98-3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1	6	국지	32.3	중1-12	소3-4	일반	98-2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2	6	국지	29.6	중1-12	소3-4	일반	98-7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3	6	국지	30.1	중1-133	소3-4	일반	98-2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4	6	국지	217.0	중1-293	소2-5	일반	98-3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5	6	국지	96.1	소2-5	소3-4	일반	98-11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6	6	국지	110.9	소2-5	소3-4	일반	98-9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7	6	국지	126.5	소2-5	소3-4	일반	98-84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8	6	국지	21.3	소3-9	소3-7	일반	98-12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9	6	국지	115.2	중1-293	소2-5	일반	98-1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10	6	국지	30.0	중1-133	소3-11	일반	98-5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11	6	국지	215.9	소2-5	소3-15	일반	98-18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12	6	국지	192.0	소2-5	소3-15	일반	98-17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규 모			W =1			21.0	<b>3</b> ^	<b>31 -</b>	
구분	등급	류별	번호	<del>폭</del> 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del>용</del>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3	6	국지	154.3	소2-5	소3-15	일반	98-38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4	6	국지	112.7	소2-5	소3-15	일반	98-15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5	6	국지	255.7	중1-132	소2-5	일반	98-2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6	6	국지	20.1	소3-12	소3-11	일반	98-4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7	6	국지	29.7	중1-132	소3-11	일반	98-4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8	6	국지	26.8	중1-48	소3-15	일반	98-3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9	6	국지	66.6	중1-138	소1-3	일반	98-33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0	6	국지	67.0	중1-138	소1-3	일반	98-44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1	6	국지	65.1	중3-131	소1-3	일반	98-32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2	6	국지	64.2	중3-131	소1-3	일반	98-364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3	6	국지	123.9	중1-48	중3-131	일반	98-29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4	6	국지	99.6	중1-48	중3-131	일반	98-31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5	6	국지	68.6	중1-48	중3-131	일반	98-32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6	6	국지	36.6	중1-48	중3-131	일반	98-35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7	4.4~5.6	특수	222.9	북성동1가 97-21	북성동1가 97-21	·보행자 전용	97-21	17.2.2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7호

주) ( )안은 구역 내 연장

#### 나) 주차장

#### ■ 주차장 결정 조서

7.11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번호	시설병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1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39일원	3,425.5	-	3,425.5	97.11.12.	
	2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567일원	795.4	-	795.4	07.01.15.	○ 지상4층 입체화, 58면 이상
	3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7-16일원	2,342.3	-	2,342.3	07.01.15.	
	4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115일원	307.0	-	307.0	_	

# 다) 궤도

#### ■ 궤도(노선) 결정 조서

N	도면	1) 1) ml		위치		연장	면적	최초	.,1	_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m²)	결정일	刊	고
_	-	궤도	하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98-606번지)	상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산2-3번지)	도로(중로1-48호선) 공원(월미도시자연공원)	581.6	5,816	09. 11.16.	중복 <sup>)</sup> 폭원:	- ,

# ■ 궤도(승하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3,406.2	-	-
-	-	궤도	하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606번지	786.2	09.11.16.	-
			상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산2-3번지	2,620.0	09.11.16.	중복결정

- ※ 지상 상부 통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
- 도로 1개소: 중로 1-48호선(면적: 217m²), 공원 1개소: 월미도시자연공원(면적: 8,219m²)

#### 2) 공간시설시설(변경없음)

가) 녹지

#### ■ 녹지 결정 조서

711	도면표시	21 2년 대	시설의	변적(m²) 위치		면적(㎡)		최초	धो न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시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_	1	녹지	완충 녹지	북성동1가 97-9	4,210.3	-	4,210.3	07.01.15.	폭원 = 20m

#### 나) 공원

#### ■ 공원 결정 조서

	도면표시	7 (1-1	시설의	A) =)		면적(㎡)		최초	
구분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_	9	월미 공원	근린 공원	북성동1가 월미산 일원	588,102.9 (59,628.3)	-	588,102.9 (59,628.3)	'13. 6.24.	(중로1-48호, 중로1-293호, 소로2-5호, 소로3-9호 중복결정)

#### 나) 공공공지

####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그ㅂ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m²)		최초	비고
구 분	번호	시설병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꼬
-	1	공공공지	북성동1가 106-9일원	6,434.8	-	6,434.8	<b>'</b> 17. 2.27.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부분

# ■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가구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면적(㎡)	계획내용	비고
2-1-7	1	북성동 98-367	1,219.5	획지	
2-2-1	2	북성동 98-216	1,045.9	획지	
2-2-1	3	북성동 98-217	1,182.5	획지	
	4	북성동 98-218	1,940.5	획지	
2-2-2	5	북성동 98-225	993.0	획지	
	6	북성동 98-226	996.4	획지	
	7	북성동 98-227	1,083.7	획지	
2-2-3	8	북성동 98-228	1,138.5	획지	
2-2-3	9	북성동 98-230	1,147.6	획지	
	10	북성동 98-559	1,184.8	획지	
	11	북성동 98-577	1,653.0	획지	
2-4-1	12	북성동 98-12	3,271.1	획지	
	13	북성동 98-580	4,396.7	획지	

# ■ 공동개발 권장계획

 도면	가구	-기 그 FH 구J( 2)	7	<b>필</b> 지	น)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	471.9	
			97-25	108.3	
		29,659.4	97-14	2,433.1	E Hd 네 히 그 어
1-1-1	1-1-1		97-15	4,374.0	특별계획구역 (선광선창부지)
			97-11	6,245.6	(20201/1)
			97-9	7,461.0	
			97-16	8,565.5	
2-1-1	2-1-1	749.5	98-8	749.5	-
			98-503	212.9	
			98-500	213.0	
			98-502	213.0	
2-1-2	2-1-2	2,072.4	98-501	213.0	공동개발권장
			98-52	406.7	
			98-498	406.9	
			98-499	406.9	
			98-250	180.4	
			98-251	327.4	
			98-263	167.9	공동개발권장
			98-270	330.9	
			98-271	331.2	
			98-252	330.9	
0.1.0	0.1.0	2,000,0	98-253	329.6	고도에비기기
2-1-3	2-1-3	3,888.9	98-254	325.9	공동개발권장
			98-255	337.5	
			98-220	99.2	
			98-426	143.8	
			98-427	155.4	공동개발권장
			98-428	231.7	
			98-532	597.1	
			98-259	346.9	
			98-260	291.4	
			98-261	342.3	공동개발권장
2-1-4 2-1			98-262	325.7	
		0.031.3	98-573	45.9	
	2-1-4	3,964.2	98-10	480.4	7 F 102 - 1 - 2
			98-264	661.5	공동개발권장
			98-256	593.3	
			98-446	613.0	공동개발권장
			98-519	263.8	0 0 1 1 2 2 0
			30 313	۵۵۵.0	

두명	가구	-기 그 마 기 ( 2)	핕	·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36	774.1				
			98-337	332.8	공동개발권장			
			98-565	598.4				
2-1-5	2-1-5	3,639.0	98-338	678.3	고 드레바니키키.			
			98-434	331.3	공동개발권장			
			98-464	469.1	고드레비크리			
		98-496	455.0	공동개발권장				
			98-339	348.5				
			98-340	336.1	공동개발권장			
			98-468	348.8				
			98-341	342.0				
2-1-6	2-1-6	3,474.0	98-444	315.6	공동개발권장			
		98-495	330.6					
			98-433	481.5				
			98-435	500.7	공동개발권장			
		98-469	470.2					
		98-443	145.4					
		98-368	227.5	그 드레비 키키				
2-1-7	2-1-7	-1-7 2,369.2	98-442	316.2	공동개발권장			
			98-463	460.6				
			98-367	1,219.5	획지			
			98-26	811.3	ਹ ⊏ ਗੀਮੀ ਹੀ ਹੀ			
			98-560	548.7	공동개발권장			
0.0.1	0.0.1	4 000 7	98-213	647.7	그 드레마 카카			
2-2-1	2-2-1	4,630.7	98-578	394.6	공동개발권장			
			98-216	1,045.9	획지			
						98-217	1,182.5	획지
			98-225	993.0	획지			
2-2-2	2-2-2	3,929.9	98-226	996.4	획지			
			98-218	1,940.5	획지			
			98-227	1,083.7	획지			
0.00	0.00	4 554 6	98-228	1,138.5	획지			
2-2-3	2-2-3	4,554.6	98-230	1,147.6	획지			
			98-559	1,184.8	획지			
			98-332	637.6	고도레바그리			
			98-335	697.8	공동개발권장			
			98-333	341.9				
2-2-4 2-2-4	2-2-4	4,183.6	98-334	867.7	공동개발권장			
			98-524	307.2				
			98-330	667.3	고드레비크리			
			98-331	664.1	공동개발권장			

<b>도</b> 명	가구	가구 -1 -1 -1 -1 -1 -1 -1		· 기	<b>.</b>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28	574.3	그 다 에비 키키
			98-329	563.2	공동개발권장
			98-325	562.0	
			98-326	556.7	공동개발권장
2-2-5	2-2-5	3,361.9	98-324	555.0	
			98-327	137.5	
			98-506	137.8	공동개발권장
			98-507	137.8	
			98-508	137.6	
			98-364	352.2	
			98-365	647.9	공동개발권장
			98-552	297.6	
			98-366	568.6	공동개발권장
2-2-6	0.06	E 400 0	98-537	583.8	중상개월전상
2-2-6	2-2-6	5,466.9	98-361	637.7	
			98-362	625.5	공동개발권장
			98-363	647.7	
			98-535	647.0	고 는게버그lzl
			98-536	458.9	공동개발권장
			98-419	429.1	
			98-58	429.1	공동개발권장
			98-437	162.2	
			98-439	242.9	
			98-440	215.1	공동개발권장
			98-420	551.8	
			98-432	404.5	
			98-438	107.0	공동개발권장
			98-568	20.8	
			98-243	374.1	
			98-273	373.8	공동개발권장
2-3-1	2-3-1	12,955.1	98-274	385.0	
(계속)	(계속)	(계속)	98-275	327.9	
			98-276	688.1	공동개발권장
			98-277	235.1	0 0 11 2 2 0
			98-509	161.4	
			98-244	332.8	
			98-278	253.0	
			98-279	211.5	
			98-280	429.7	공동개발권장
			98-281	132.0	
			98-282	176.3	
			98-283	213.7	
			98-285	203.1	

도면	가구 번호	가구면적(㎡)		<b>크</b> 지	비고
번호	번호	/   u ¬(III/	위치	면적(m²)	~ -1-
			98-241	164.9	
			98-424	153.8	
			98-448	149.9	공동개발권장
			98-449	197.2	
			98-540	114.3	
			98-541	112.3	
			98-542	98.3	
			98-543	108.3	
			98-544 98-545	108.3	
			98-546		
			98-242	131.0 579.1	
			98-533	869.6	
			98-452	154.3	공동개발권장
2-3-1	2-3-1	12,955.1	98-453	161.9	
201	201	12,000.1	98-450	146.6	
			98-451	147.2	
			98-454	302.9	
			98-455	157.7	공동개발권장
			98-456	144.0	
			98-457	144.9	
			98-458	144.0	
			98-459	141.0	
			98-460	135.8	
			98-461	149.5	
			98-462	154.5	
			98-268	324.6	공동개발권장
			98-269	226.5	
			98-59	361.4	
			98-61	512.4	공동개발권장
			98-62	202.4	
			98-63	333.6	
			98-64	269.1	
2-4-1	2-4-1	10,950.1	98-286	311.8	
			98-12	3,271.1	 획지
			98-577	1,653.0	획지
			98-580	4,396.7	획지
			98-23	248.4	
3-1-1	3-1-1	1,678.4	98-80	731.9	공동개발권장
			98-81	449.7	
			98-569 98-79	248.4 581.2	
3-1-2			98-78	557.5	
	3-1-2	2,285.2	98-77	551.1	공동개발권장
			98-22	595.4	
			98-234	487.6	
			98-233	500.4	공동개발권장
3-1-3	3-1-3	2,031.3	98-232	536.4	
					공동개발권장
			98-25	506.9	

도면	! 가구		필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m²)	미北
			98-24	432.8	
			98-114	165.2	공동개발권장
0.1.4	1 420 7	98-489	167.7		
3–1–4	3-1-4	1,438.7	98-116	163.7	
			98-117	346.6	공동개발권장
			98-493	162.7	
			98-30	233.5	
			98-101	233.7	
			98-102	238.2	
			98-103	126.0	그 드레비 키키
			98-104	112.3	공동개발권장
			98-105	234.7	
			98-466	120.0	
			98-467	119.0	
			98-106	157.9	
3-1-5	3-1-5	3,370.1	98-409	159.0	
		, –	98-413	149.6	⊐ F -1\11\1 -1 -1
			98-414	208.2	공동개발권장
			98-415	159.2	
		98-416	160.2		
		98-410	160.1		
		98-411	231.2		
			98-412	178.8	공동개발권장
			98-417	161.3	0 0 11 2 2 0
			98-418	227.2	
			98-31	292.6	
			98-87	339.7	
			98-88	306.7	공동개발권장
			98-89	160.7	
			98-90	152.8	
			98-91	273.4	
			98-92	270.0	공동개발권장
			98-436	131.4	0 0/11 = = 0
			98-488	154.3	
			98-93	141.1	
			98-370	141.1	
			98-377	153.9	
3-1-6	3-1-6	4,280.6	98-378	176.8	공동개발권장
			98-379	142.8	
			98-380	142.2	
			98-371	140.8	
			98-372	140.8	
			98-373	136.4	
			98-373	140.4	
			98-374	170.7	고도케바리지
				156.5	공동개발권장
			98-376		
			98-381	138.8	
			98-382	140.0	
	<u> </u>		98-383	136.7	

도면 가구		1 = 1 = 1 ( 0)	필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	비고
			98-7	6.8	
			98-74	197.4	
3-1-7	3-1-7	778.0	98-75	278.8	공동개발권장
(1)	$(1) \qquad (1)$	110.0	98-76	32.9	중중개월전경
<b>\</b> —			98-429	98.4	
			98-430	163.7	
			98-481	162.6	
			98-32	142.3	고드레비크기기
			98-82	171.9	공동개발권장
			98-445	147.6	
3-1-7	3-1-7		98-83	163.8	
		1,700.3	98-84	155.7	
(2)	(2)				코드레비.
			98-85	173.9	공동개발
			98-515	160.6	권장
			98-520	276.0	
			98-527	145.9	
			98-128	155.5	
			98-129	312.0	
			98-132	164.5	
			98-526	148.8	
3-1-8	3-1-8	1,688.2	98-547	210.0	공동개발권장
			98-126	168.2	
			98-127	187.8	
			98-131	190.2	
			98-487	151.2	
			98-27	76.8	
			98-50	431.2	
			98-235	141.0	공동개발권장
3-1-9	3-1-9	2,004.8	98-490	193.8	
			98-491 98-236	173.0 504.9	
			98-237	319.2	공동개발권장
			98-494	164.9	0 0/11 0 0 0
			98-51	438.8	
			98-238	129.7	2-2-1-1
			98-522	188.0	공동개발권장
3-1-10	3-1-10	2,101.1	98-523	167.4	
		,	98-54	35.0	
			98-239	645.1	공동개발권장
			98-240	497.1	
			98-28	184.2	
			98-175	159.2	
			98-176	165.6	공동개발권장
3-1-11 3-1-11		98-497	164.9	OUVIELO	
	0.055.5	98-514	156.0		
	2,377.7	98-516	175.0		
			98-177	333.1	공동개발권장
			98-178	334.5	
			98-179	168.4	고도에비키키
			98-180	361.3	공동개발권장
			98-525	175.5	

도면	가구	가구면적(㎡)	핕	!지	บ]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면적(m)	위치	면적(m²)	비고
			98-29	154.0	
			98-398	159.0	
			98-403	174.5	공동개발권장
			98-404	158.5	8 8 개월 년 8
			98-405	156.6	
			98-406	160.0	
			98-399	161.5	
			98-400	158.1	
			98-401	195.8	고드레비크기
			98-402	164.1	공동개발권장
			98-407	160.0	
			98-408	159.3	
			98-169	112.1	
			98-170	232.7	
	3-1-12	1-12 5,492.0	98-171	232.7	
			98-172	72.2	그 드레비크리
0.1.10			98-173	121.1	공동개발권장
3-1-12			98-183	128.3	
			98-184	173.0	
			98-528	128.3	
			98-174	225.5	
			98-187	226.3	
			98-188	237.2	
			98-189	229.1	공동개발권장
			98-190	128.0	
			98-191	233.0	
			98-566	101.1	
			98-192	145.3	
			98-193	127.3	
			98-194	120.9	
			98-479	163.3	공동개발권장
			98-480	181.4	
			98-562	92.6	
			98-563	119.2	
			30 000	110.2	_

도면	가구	-1 7 <del>-1</del> -1/ 2)	ā	길지	ען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84	141.3		
			98-390	153.8		
			98-391	174.5		
			98-392	141.1	고 드레비기기	
			98-393	137.9	공동개발권장	
			98-394	139.8		
			98-395	140.8		
			98-40	137.9		
			98-385	140.9		
3-1-13	3-1-13	3,209.9	98-386	138.6		
			98-387	138.3		
			98-388	175.5	공동개발권장	
			98-389	154.5		
			98-396	140.7	공동개발권장	
			98-397	141.7		
			98-151	347.4		
			98-152	392.3		
			98-153	148.1		
			98-564	124.8		
			98-37	361.2	공동개발권장	
			98-133	187.5		
			98-134	101.0		
			98-135	139.6		
			98-472	177.6		
			98-473	122.0		
			98-553	203.5		
			98-474	39.6		
3-1-14	3-1-14	3,127.0	98-136	109.8		
0 1 14	0114	0,121.0	98-137	201.2		
			98-138	381.6	공동개발권장	
			98-475	134.4		
			98-476	174.9		
			98-561	200.7		
			98-141	166.5		
			98-477	145.1	공동개발권장	
			98-478	116.5		
			98-517	164.3		

 도면	가구	-1 T -1 -1/ 2\	리그머리( ²) 필지		n)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43	48.7	
			98-48	293.9	
			98-55	179.9	
			98-207	152.5	공동개발권장
3-1-15	3-1-15	2,448.6	98-208	291.6	
			98-209	61.6	
			98-210	428.9	
			98-211	498.0	고도케바리자
			98-212	493.5	공동개발권장
			98-42	15.1	
			98-47	308.5	
			98-202	36.3	공동개발권장
			98-203	273.8	ㅇ 하기된 단경
3-1-16	3-1-16	1,614.6	98-204	154.6	
			98-483	151.6	
			98-205	161.8	공동개발권장
			98-206	352.4	
			98-484	160.5	
		-17 1,855.8	98-200	397.7	그 드레비크 기
			98-201	605.0	공동개발권장
0 1 17	0.1.17		98-197	318.1	공동개발권장
3–1–17	3–1–17		98-198	179.2	
			98-485	171.6	
			98-486	184.2	
			98-123	516.2	고도케바리자
2 1 10	2 1 10	1 101 /	98-125	70.5	공동개발권장
3–1–18	3-1-18	1,131.4	98-38	218.5	고 드레버크
			98-124	326.2	공동개발권장
			98-56	498.3	고두케바그기기
			98-482	187.7	공동개발권장
			98-297	511.0	
			98-298	511.2	공동개발권장
			98-299	511.6	궁중개월건강
3-2-1	3-2-1	4,283.0	98-44	514.1	공동개발권장
3-4-1	J-Z-1	4,200.0	98-287	507.1	o 중/개월건/상
			98-288	128.6	
			98-289	523.9	
			98-510	130.8	공동개발권장
			98-511	130.4	
			98-512	128.3	

두며	가구		획지	/필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02	437.0					
			98-303	274.1					
			98-312	146.7	공동개발권장				
			98-313	325.3					
			98-529	127.1					
			98-304	270.8					
			98-305	254.1					
			98-306	266.6	고도케바리자				
3-2-2	3-2-2	4,039.5	98-309	243.4	공동개발권장				
			98-310	260.2					
			98-311	272.6					
			98-291	130.6					
			98-292	368.4					
			98-293	150.2	고도케바리카				
			98-504	150.5	공동개발권장				
			98-505	191.4					
			98-521	170.5					
			98-314	296.3					
							98-315	278.2	공동개발권장
			98-323	300.0					
			98-316	277.9					
	3-2-3		98-317	277.8	그 드에비 키키				
3-2-3		3,262.7	98-321	263.9	공동개발권장				
			98-322	265.4					
			98-11	480.4					
			98-318	277.8					
			98-320	263.7	공동개발권장				
			98-345	281.3					
			98-350	314.3					
			98-351	263.0	공동개발권장				
			98-356	295.3	0 0 11 2 2 0				
3-2-4	3-2-4	1,901.9	98-352	267.8					
		-,- · -· <del>-</del>	98-353	234.7	크 드리네 카리				
			98-354	254.5	공동개발권장				
			98-355	272.3					
			98-357	179.8					
			98-358	264.4					
3-2-5	3-2-5	840.1	98-359	158.8	공동개발권장				
			98-538	135.2	5 5 11 2 2 0				
			98-551	101.9					
4 1 1	4 1 1	50.4.0							
4-1-1	4-1-1	504.9	98-441	504.9					
			106-5	229.6					
			106-6	1,347.3					
			106-7	8,617.3	E 버게 취 그시				
5-1-1	5-1-1	25,809.9	106-8	11,820.6	특별계획구역				
0 1 1		20,000.0	106-10	327.2	(갑문친수공간)				
			106-11	1,233.6					
			106-12	552.0					
			125-5	1,682.3					

도면 번호	가구	가구면적(㎡)	Ā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m²)	山下	
	6-1-1		102-2 29280		29280.2	
6-1-1		6-1-1 49,487.2	102-11	13184.5	특별계획구역	
0-1-1			102-32	1201.4	(이민사박물관)	
			125	5821.1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북성동1가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1-1-1	98-3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참조)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2-1-1	북성동1가 98-8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2m, 3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2-1-2	북성동1가 98-52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2-1-3	98-532 일대 (결정도면	높 이	○ GL+30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10일대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2-1-4	(결정도면	높 이	○ GL+34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০ 70% ০) ক	
015	북성동1가 98-434 일대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2-1-5	(결정도면	높 이	○GL+42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০ 70% ০) ঠ	
	북성동1가 98-444 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1-6	(결정도면	높 이	○GL+42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443 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1-7	30-443 글네     (결정도면	높 이	○ GL+42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2-2-1	북성동1가 98-26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북성동1가 98-225 일대 (결정도면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2-2-2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2-2-3	북성동1가 98-227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2-2-4	북성동1가 98-524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2-2-5	북성동1가 98-507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	건폐율	○ 70% 이하	
2-2-6	북성동1가 98-507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3-1	98-59 일대 (결정도면	높 이	○ GL+42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2-4-1	북성동1가 98-62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8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	북성동1가 98-569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2	북성동1가 98-78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3	북성동1가 98-25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০ 70% ০) ক	
3-1-4	북성동1가 98-493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5	북성동1가 98-101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6	북성동1가 98-436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7	북성동1가 98-16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7 (2)	북성동1가 98-76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북성동1가 98-487 일대 (결정도면	건폐율	○ 70% 이하	
3-1-8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9	북성동1가 98-27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0	북성동1가 98-54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기준 350% 이하	
3-1-11	98-175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건 6 시 전   참조)	 높 이	○ 상한 800% 이하 ○ GL+42m 이하	
	<u></u>		OLT42III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건축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	<u> </u>	○기준 350% 이하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_		○ 상한 800% 이하 ○ GL+42m 이하	
	북성동1가		- 98-29, 98-398, 98-403, 98-404, 98-405,	
3-1-12	98-172 일대		98-406, 98-399, 98-400, 98-401, 98-402, 98-407,	
0 1 12	(결정도면		98-408, 98-169, 98-183, 98-170, 98-171, 98-172,	
	참조)	높 이	98–184, 98–173, 98–528	
			3-4-12 GL+46m 이하	
			- 98-174, 98-187, 98-188, 98-189, 98-190, 98-191, 98-566, 98-192, 98-193, 98-194, 98-479, 98-480,	
			98-562, 98-563	
		カネル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_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B 서도1의	건폐율	0 70% 이하	
	북성동1가 「   98-155 일대	일대 용적률	○기준 350% 이하	
3-1-13	(결정도면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u></u> 높이	○ GL+42m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1 2 2 - 2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O 게 큰	○기준 350% 이하	
3-1-14	98-474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V -J =	이기준 350% 이하	
3-1-15	98-43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설정도년 참조)	<u></u> 높이	○ GL+46m 이하	
	"-/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 기준 350% 이하	
3-1-16	98-42 일대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결정도면 참조)	1 .1	○ 상한 800% 이하	
	(a)	높 이	○ GL+46m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_,,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A -1 7	○기준 350% 이하	
3-1-17	98-485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6m 이하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A =1 =	이기준 350% 이하	
3-1-18	98-125 일대 (결정도면	0   -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40-11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0 2) =	이기준 350% 이하	
3-2-1	98-511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50m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H )) [ 1 ]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 98-529 일대	0 거 ㄹ	○기준 350% 이하	
3-2-2	30-323 글네   (결정도면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 참조)	<u></u> 높이	○ GL+50m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 ~1 <del>=</del>	○기준 350% 이하	
3-2-3	98-322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결정도면   참조)	<u></u> 높이	○ GL+50m 이하	
	1/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북성동1가	건폐율	○ 70% 이하	
3-2-4	98-353 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결정도면 참조)	높 이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북성동1가	건폐율	○ 70% 이하	
3-2-5	98-551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D	
	북성동1가	건폐율	○ 60% 이하	
4-1-1	98-441 (결정도면	용적률	○ 300% 이하	
	참조)	높 이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3m (결정도 참조)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북성동1가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r 1 1	106-8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5-1-1	일대 (결정도면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참조)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기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북성동1가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6-1-1	102-2 일대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V I I	(결정도면 참조)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召立)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기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98-39 일원	용적률	○ 540% 이하	
1	(결정도면	높 이	○GL+24m 이하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98-567 일원	용적률	○ 540% 이하·	
2	(결정도면 참조)	높 이	○GL+2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98-16 일원	용적률	○ 540% 이하	
3	(결정도면	높 이	○GL+22m 이하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98-115	용적률	○ 540% 이하·	
4	(결정도면 차지)	높 이	○GL+24m 이하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sup>※</sup> 건축물의 높이계획과 관련하여 본 지구내 건축 및 개발시는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건축허가 전 협의를 통해 월미RS의 관제범위와 건축물의 상충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 차량동선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1-1-1, 2-1-1, 2-1-2, 2-2-1, 2-3-1, 2-4-1, 3-1-1, 3-1-2, 3-1-7(1), 3-1-17, 3-2-1, 3-2-2, 3-2-3, 3-2-4, 3-2-5	결정도면 참조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주요 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2-1-2, 98-498 차량출입구 제외

# ■ 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2-1-3, 2-1-4, 2-1-5, 2-1-6, 2-4-1	결정도면	주차장 진입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 (공동개발시 미적용)
2-3-1	참조	공동 출입로	○필지별 개발시 또는 공동개발시 주차장 진출입 공간을 공동으로 설치
98-255, 98-259, 98-338, 98-339, 98-444, 98-419, 98-285, 68-61	결정도면 참조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구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조성시 적용

# ■ 대지 내 공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상지	대상지	전면	<ul> <li>조성방법</li> <li>- 인도와 접하는 경우나 월미 문화의 거리변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 차도 또는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인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 특별계획구역 S1(1-1-1), 3호 주차장 서측 소로 1-1호선변의 15m 폭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데크 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며,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계획 수립시 이를 결정</li> <li>- 전면공지 조성시는 인접한 차도 또는 보도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li>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건축물의 지하구조물, 담장, 계단, 화단 등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li> <li>○ 전면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도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li> </ul>
전구역	전구역	공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상지 대상지 전구역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ul> <li>○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가 계획된 대지에서는 주차를 위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조성하여야 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조성방법</li> <li>- 결정도에서 정한 위치에 도로에 준하여 포장 등을 하여 조성</li> <li>- 지상부에서 8m 높이까지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주차출입구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함</li> <li>○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단, 공동개발이 계획된 일단의 필지 전체가공동으로 개발되어 맹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부여하지 않음)</li> <li>○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공개 공지	<ul> <li>○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규정을 준수</li> <li>○ 공개공지는 민간부문에서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공개공지는 지상부에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중로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는 교차지점에 설치하도록 함</li> <li>○ 조성방법</li> <li>- 공개공지 조성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함</li> <li>-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li> <li>○ 공개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도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li> <li>○ 공개공지의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대지의 조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적용 ○수종은 인천시 향토수종을 주 수종으로 하되 계절감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식재를 하고, 수경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대지의 조경을 전면도로변 및 가각부에 설치시 용적률 완화 부여 ○대지의 조경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상지	대상지	공 행 로	<ul> <li>○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의 실외 또는 실내에 규정된 폭원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함</li> <li>○ 조성방법</li> <li>-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연접대지간 단차가 없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li> <li>-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 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 공간 등 보행통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과는 차폐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바닥재료 선정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은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li> <li>○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전구역	전구역	공 보 통	

# ■ 환경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옥상 녹화	<ul> <li>○ 옥상녹화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의 인정면적은 옥상녹화 조성면적 가운데 계단탑, 설비면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li> <li>○ 옥상에 녹화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옥상녹화면적의 100분의 50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li> <li>○ 옥상녹화를 조성한 대지는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적률 완화 부여</li> </ul>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녹색 주차장	○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 되는 곳을 선정 ○ 잔디는 주차면보다 1~2cm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 녹색주차장 설치시 설치면적에 의해 용적률 완화 부여
<b>.</b>	· 也不当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ul> <li>○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을 권장</li> <li>○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li> </ul>
		녹색 건축 인증	<ul> <li>○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녹색건축 인증을 권장</li> <li>○ 녹색건축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li> </ul>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층 바닥 높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는 상업용도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대상지	대상지 전구역	외벽 처리	<ul> <li>● 벽면처리의 통일성</li> <li>-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조화 유지</li> <li>○ 개구부 없는 벽면의 처리</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폭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가로노출 불가</li> <li>○ 개구부</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설치 불가</li> <li>○ 투시벽</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li> <li>○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li> <li>-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li> <li>○ 셔터</li> <li>- 폭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li> <li>○ 지하층 출입구의 설치</li> <li>-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 설치 불가</li> </ul>		
전구역		전구역	전구역	<b>선</b> 子역	옥외 광고물
		색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 및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야간 경관	<ul> <li>○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li> <li>○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하는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조명의 방향은 상향 권장)</li> <li>○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li> </ul>		
		건축물 형태	○건축물의 형태가 탑상형으로 건축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녹지, 휴게소, 광장 등)가 확보 가능토록 건축		
		경사 지붕	○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가로경관이나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경사형 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1층 전면부 입면 처리	<ul> <li>○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상기의 건축물 외관에 대한 규제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준수</li> <li>○1층 층고</li> <li>- 1층의 층고는 인접건물 1층 층고와 10cm 이상 차이를 둘 수 없음</li> <li>- 단, 인접 건물과 기능상의 차이가 확연하거나 지형상 층고의 통일이 어렵다고 당해 건축위원회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li> <li>○외벽면 재료</li> <li>- 2층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심의시 인접한 건물(좌우 각 3개씩)의 입면색채표본과 대상지 건축물의 1층 전면 색채표본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li> <li>○개구부</li> <li>- 1층 전면에는 투시형태의 개구부 설치 권장</li> </ul>

#### ■ 지하공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대상지)	구 분	계획내용
월미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역	지하층 건축물 용도 불허	○ 지하층 건축물 용도는 지상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용도 를 제한 ○ 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내용 변경 시 이에 따름

#### ■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유예기간 부여(변경)(신설)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고시일(2021.12.30.)부터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2024.12.30.)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 바.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_	위치 l-l-l, 완충 녹지1		발 방향 허용	기획내용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참고) ○개발방향  - 대규모 이전적지에 대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거점개발  - 숙박·위략·문화 복합기능 부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3호 숙박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17호 공장 가운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 터 이상인 것
			H =1	※ 단, 인천광역시 조례 제3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건	[폐율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용	-적률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높 이 건축물 형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해안변 건축입면부 차경 확보
		て	l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소로1-1호선변 15m
		차	량동선	○ 중로1-22호선변 차량출입구 2개소 허용
		주	차장	○주차장용지 15%이상 의무 확보

- 주)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등)
  - 3. 1호 완충녹지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부여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개발방향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개발방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및 용도 지역 변경 이후 본 지침 적용 가능 - 단기방안: 매립목적 범위 내에서 해양박물관 설치 - 장기방안: 해양박물관과 연계한 관광복합컴플렉스 및 친수공간으로 거점개발 유도											
S2	5-1-1	ako 나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 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단, 지하층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수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 및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지하층의 재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 우 불허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
		건폐율		○ 30% 이하											
		용기	적률	○ 100% 이하											
		노	0]	○ GL+38m 이하 (건축허가 전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5m, 해안변 5m											
	THE CLU		동로	○ 평화의 등대 연계 											

- 주) 1. 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에 투자유치 예정인 "인천해양박물관" 사업계획을 반영
  -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항만공항시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 3.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항만공항시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 기타에 관한 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 공지	<ul> <li>○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li> <li>○도로변 5m, 해안변 5m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을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지정하고 긴급차량 및 보수차량 외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함</li> <li>○조성방법</li> <li>- 인도와 접하는 경우나 월미 문화의 거리변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li> <li>- 전면공지 조성시는 인접한 차도 또는 보도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단, 이미 조성된 상태 및 현상설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조성하여 보행이 단절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성)</li>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건축물의 지하구조물,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단, 이미 조성된 상태 및 현상설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조성하여 보행이 단절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성)</li> </ul>			
S2	5-1-1	대지내 공지 계획	공개 공지	<ul> <li>○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수</li> <li>○ 공개공지는 지상부에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중로 이상의 도로 가 교차하는 대지는 교차지점에 설치</li> <li>○ 조성방법</li> <li>- 공개공지 조성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함</li> <li>-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 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li> <li>○ 공개공지의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대지의 조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적용 ○수종은 인천시 향토수종을 주 수종으로 하되 계절감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 도록 보조식재 조성 ○대지의 조경을 전면도로변 및 가각부에 설치 ○대지의 조경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
			공상 보통	<ul> <li>○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의 실외 또는 실내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조성</li> <li>○ 조성방법</li> <li>-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연접대지간 단차가 없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li> <li>(단, 이미 조성된 상태 및 현상설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조성하여 보행이 단절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성)</li> <li>-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 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 공간 등 보행통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과는 차폐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바닥재료 선정 및 포장을 하고,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은 캐노피를 설치</li> <li>○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S2	5-1-1	환경 친화적 건축물 에 관한 계획	옥상 녹화	○ 옥상녹화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의 인정면적은 옥상녹화 조성면적 가운데 계단탑, 설비면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 ○ 옥상에 녹화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옥상녹화면적의 100분의 50을 대지의 조경면 적으로 인정 ○ 옥상녹화를 조성한 대지는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적률 완화 부여
			녹색 주차장	○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 되는 곳을 선정 ○ 잔디는 주차면보다 1~2cm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 녹색주차장 설치 시 설치면적에 의해 용적률 완화 부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획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
			녹색 건축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 관련 법 령에 의거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 ○녹색건축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
		기타에 관한 계획	1층 바닥 높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는 상업용도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외벽 처리	<ul> <li>○ 벽면처리의 통일성</li> <li>현상설계결과에 따라 해양박물관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벽면재료 선정하되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과 의장, 재료, 색채 등에 있어 조화를 유지</li> <li>○ 개구부 없는 벽면의 처리</li> <li>목 20m 이상의 도로 및 목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가로노출 불가</li> <li>○ 투시벽</li> <li>목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예외</li> <li>○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li> <li>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li> <li>○ 셔터</li> </ul>
				<ul> <li>폭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li> <li>○지하층 출입구의 설치</li> <li>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 설치 불가</li> </ul>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옥외 광고물	<ul> <li>○ 옥외광고물</li> <li>- 돌출간판은 1개 건물에 1줄만 설치하여야 함. 돌출간판의 규격은 건물높이가 1층 여하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1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2m 이내 크기로 제한</li> <li>- 애드벌룬,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공연간판은 설치를 금지</li> <li>- 기타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표시방법을 준함</li> <li>○ 건축물의 지번표시</li> <li>-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표시</li> </ul>
			색채	○ 색채 경관은 한국표준색계인 먼셀시스템(Muncell system)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월 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색채경관 문화복합권역 가이드라인을 준용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행
		기타에 관한 계획	관한 야간	o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의 내용 준용
S2	5-1-1		건축물 형태	○건축물의 형태는 현상설계 결과에 따르며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녹지, 휴게소, 광전등)가 확보 가능토록 건축
			1층 전면부 입면 처리	<ul> <li>○건축물 외관에 대한 규제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준수</li> <li>○1층 층고</li> <li>- 1층의 층고는 인접건물 1층 층고와 10cm 이상 차이를 둘 수 없음</li> <li>- 단, 현상설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상 층고의 통일이 어렵다고 당해 건축적원회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li> <li>○외벽면 재료</li> <li>- 2층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심의시 인접한 전물(좌우 각 3개씩)의 입면색채표본과 대상지 건축물의 1층 전면 색채표본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li> <li>○개구부</li> <li>- 1층 전면에는 투시형태의 개구부 설치</li> </ul>
		지하공 간에 관한 계획	지하층 건축물 용도 불허	○ 지하층 건축물 용도는 지상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용도를 제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개발방향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개발방향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월미공원에서 제척) 후 적용 가능 - 단기방안: 용도지역 변경 전까지 근린공원 유지 - 장기방안: 해양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거점 개발 유도
S3	6-1-1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중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 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건폐율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용?	석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높	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건축	추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5m
		공공 통	·보행 ·로	○이민사박물관역~이민사박물관 연계

- 주)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등)
  - 3. 특별계획구역 내 이민사박물관은 존치

# 사.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완화기준	비고
7.5	ગ⊏ગોમો		○ 기준용적률 × 0.2	○ 획지계획 준수시 적용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공동개발 적용 면적 ÷ 총 공동개발계획 면적) × 0.2	○ 공동개발 면적에 따라 차 등 적용
건축물 용도	전층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연면적 ÷ 건축연면적) × 0.2 ○ 기준용적률 × (1층 권장용도 연면적 ÷ 1층 건축연면적)	○ 총 연면적 20% 이상시 인정 ○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1층 연면적 30% 이상시 인정
		준수시 위치 주수시	× 0.2 ○기준용적률 × 0.1	○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a	○ 필로티 a=1.2, 개방형 a=2.0
대지내 공지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위치 및 규모 준수·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필로티 a=1.2, 개방형 a=2.0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조성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	전면가로 및 가각부 조성시	○ 기준용적률 × 0.025	_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3	○ 법적 조경면적 제외
환경	녹색건축	인증시	○ 최우수: 기준용적률 × 0.12 ○ 우수: 기준용적률 × 0.08 ○ 우량: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완성 친화적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적용
	녹색 주차장	조성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_
주차 및 차량동선·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구 부설	출입구 조성 · 개방시	○기준용적률 × 0.1	○ 결정도상 적용 대지
시 6 6 전	부설 주차장 확보	법정주차대수 15% 이상 추가 확보시	○기준용적률 × 0.1	_

- 주) 1.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계획수립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 2. 가구단위 공동개발시는 별도의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
  - 3.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4. 공동개발 면적이란 권장하고 있는 공동개발계획내에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선택적 공동개발을 말함
  - 5.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 6.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전면공지가 공동주차진출입로와 중복되어 공동주차진출입로로 조성할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함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이내

# 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1. 공개공지의 위치 ·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2. 대지의 조경 위치 ·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3.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4.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 5.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6.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 없음)

	구분	용 도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2	허용용도	<ul> <li>○가구단위 공동개발시</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 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16호 위략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구분	용 도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3	허 <del>용용</del> 도	<ul> <li>○ 가구단위 공동개발시</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1호 단독주택(단, 기존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받은 연면적에 한하여 허용)</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16호 위략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용도 불허용도	<ul> <li>○ 전층 권장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li>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지하층: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li> </ul>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4	허용용도	<ul> <li>○가구단위 공동개발시</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li> <li>○가구단위 공동개발 이외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16호 위략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용도	- 제21오 건경규계시설 ○ 1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구분	용 도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5	허 <del>용용</del> 도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상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1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D	허 <del>용용</del>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P	허용용도	○ 해당사항 없음					
	권장용도	○ 해당사항 없음					
	불허용도	○ 해당사항 없음					

# V.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122호

#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7. 29.

#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
-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O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²)		비고
번호	1 4 3	Π ^1	기 정	변 경	변경후	
_	월미지구단위 계획구역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347,243.3	증) 864.9	348,108.2	_

O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_	월미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증가(증 864.9㎡) - 347,243.3㎡ → 348,108.2㎡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별첨(구보게재 생략)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 O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성비(%)	비고		
<b>十</b> 世		기정	변경	변경후	T'8"(%)	미끄
	합 계	347,243.3	증) 864.9	348,108.2	100.0	
주거	준주거	486.0	증) 18.9	504.9	0.1	
상업	일반상업	203,809.4	감) 2,800.2	201,009.2	57.7	
공업	일반공업	1,251.6	감) 30.0	1,221.6	0.4	
<u>2 H</u>	준공업	47,361.3	감) 83.9	47,277.4	13.6	
녹지	보전녹지	63,383.6	증) 3760.1	67,143.7	19.3	
	미지정	30,951.4	_	30,951.4	8.9	

#### O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o) <del>&gt;</del> ]	위 치 용도지역		면적(m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 7	기정	변경	현색(皿)	ठनम	결정(현정)/기표
_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4.9	500%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_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일반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201,009.2	1,000%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_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1,221.6	350%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_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47,277.4	400%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_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보전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67,143.7	50%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_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미지정	미지정	30,951.4	_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O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고도지구	북성동1가 98-50번지 일원	GL+50m 이하	182,438.7	1984. 8.14. (인고 제770호)	_
변경	_	고도지구	고도지구	북성동1가 98-50번지 일원	GL+50m 이하	187,418.4		

#### - 고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_	고도지구	○ 면적증가(증 4,979.7㎡) - 182,438.7㎡ → 187,418.4㎡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 보호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_	시설보호 지구	항만시설 보호지구	중구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3,200,760.0㎡ (지구단위구역 내 2,299㎡ 포함)	1965. 7.14.	-
변경	_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구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3,201,054.0㎡ (지구단위구역 내 2,593㎡ 포함)		

#### - 보호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_	보호지구	<ul> <li>면적변경(증 294㎡)</li> <li>3,200,760.0㎡ → 3,201,054.0㎡</li> <li>지구명칭 변경</li> <li>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보호지구)</li> <li>→ 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li> </ul>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및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O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도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O 도로총괄표

ュ	분		합 겨	1	1 류				2 류		3 류		
	正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44	7,865.2	92,479.8	10	4,366.2	66,743.6	6	638.3	6,719.8	28	2,860.7	19,016.4
ii 기	변경	44	7,865.2	92,479.8	10	4,366.2	66,743.6	6	638.3	6,719.8	28	2,860.7	19,016.4
중로	기정	8	4,032.4	65,126.8	6	3,640.4	59,720.8	1	162.0	2,640.3	1	230.0	2,765.7
子子	변경	8	4,032.4	65,126.8	6	3,640.4	59,720.8	1	162.0	2,640.3	1	230.0	2,765.7
소로	기정	36	3,832.8	27,353.0	4	725.8	7,022.8	5	476.3	4,079.5	27	2,630.7	16,250.7
	변경	36	3,832.8	27,353.0	4	725.8	7,022.8	5	476.3	4,079.5	27	2,630.7	16,250.7

※ 연장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O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2) 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12	20	국지	1,485 (398.6)	대2-17	중1-138	일반	98-65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2	20	국지	1,485 (398.6)	대2-17	중1-138	일반	98-65			
기정	중로	1	48	20	국지	2,555 (906.3)	대2-17	대2-17	일반	산2-12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1991-97호	
변경	중로	1	48	20	국지	2,555 (906.3)	대2-17	대2-17	일반	산2-12			
기정	중로	1	132	20	국지	300	중1-48	중1-138	일반	98-53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32	20	국지	300	중1-48	중1-138	일반	98-53			
기정	중로	1	133	20	국지	245	중1-132	중1-12	일반	98-49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33	20	국지	245	중1-132	중1-12	일반	98-49			
기정	중로	1	138	20	국지	1,485	중1-12	중1-48	특수	98-13	75.5.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1	138	20	국지	1,485	중1-12	중1-48	특수	98-13			
기정	중로	1	293	20	국지	305.5	중1-48	중1-12	일반	98-3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중로	1	293	20	국지	305.5	중1-48	중1-12	일반	98-33			
기정	중로	2	132	15	국지	162	중1-48	중1-138	일반	98-57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2	132	15	국지	162	중1-48	중1-138	일반	98-57			
기정	중로	3	131	12	국지	230	중1-48	중1-132	일반	98-290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변경	중로	3	131	12	국지	230	중1-48	중1-132	일반	98-290			
기정	소로	1	1	10	국지	272	중1-12	북성동1가 97-25	일반	97-1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1	1	10	국지	272	중1-12	북성동1가 97-25	일반	97-10			
기정	소로	1	2	10	국지	199.8	중1-132	중1-12	일반	98-22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1	2	10	국지	199.8	중1-132	중1-12	일반	98-222			
기정	소로	1	3	10	국지	186.5	중1-132	중2-132	일반	98-326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1	3	10	국지	186.5	중1-132	중2-132	일반	98-326			
기정	소로	1	4	10	국지	67.5	중1-138	중1-48	일반	98-6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1	4	10	국지	67.5	중1-138	중1-48	일반	98-60			
기정	소로	2	1	8	국지	60.2	중1-12	소1-2	일반	98-25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1	10	국지	60.2	중1-12	소1-2	일반	98-250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2	2	8	국지	65.7	중1-133	소1-2	일반	98-21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2	10	국지	65.7	중1-133	소1-2	일반	98-218		
기정	소로	2	3	8	국지	65.1	중1-138	소1-2	일반	98-25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3	8	국지	65.1	중1-138	소1-2	일반	98-259		
기정	소로	2	4	8	국지	65.3	중1-133	소1-2	일반	98-22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4	8	국지	65.3	중1-133	소1-2	일반	98-227		
기정	소로	2	5	8	국지	220.0	중1-133	중1-293	일반	98-3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2	5	8	국지	220.0	중1-133	중1-293	일반	98-35		
기정	소로	3	1	6	국지	32.3	중1-12	소3-4	일반	98-2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	6	국지	32.3	중1-12	소3-4	일반	98-22		
기정	소로	3	2	6	국지	29.6	중1-12	소3-4	일반	98-7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	6	국지	29.6	중1-12	소3-4	일반	98-79		
기정	소로	3	3	6	국지	30.1	중1-133	소3-4	일반	98-2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3	6	국지	30.1	중1-133	소3-4	일반	98-25		
기정	소로	3	4	6	국지	217.0	중1-293	소2-5	일반	98-3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4	6	국지	217.0	중1-293	소2-5	일반	98-35		
기정	소로	3	5	6	국지	96.1	소2-5	소3-4	일반	98-11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5	6	국지	96.1	소2-5	소3-4	일반	98-115		
기정	소로	3	6	6	국지	110.9	소2-5	소3-4	일반	98-9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6	6	국지	110.9	소2-5	소3-4	일반	98-92		
기정	소로	3	7	6	국지	126.5	소2-5	소3-4	일반	98-84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7	6	국지	126.5	소2-5	소3-4	일반	98-84		
기정	소로	3	8	6	국지	21.3	소3-9	소3-7	일반	98-12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8	6	국지	21.3	소3-9	소3-7	일반	98-128		
기정	소로	3	9	6	국지	115.2	중1-293	소2-5	일반	98-1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9	6	국지	115.2	중1-293	소2-5	일반	98-19		
기정	소로	3	10	6	국지	30.0	중1-133	소3-11	일반	98-5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0	6	국지	30.0	중1-133	소3-11	일반	98-51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구 <u>교</u> 경과지	역조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1	6	국지	215.9	소2-5	소3-15	일반	98-18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1	6	국지	215.9	소2-5	소3-15	일반	98-180		
기정	소로	3	12	6	국지	192.0	소2-5	소3-15	일반	98-17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2	6	국지	192.0	소2-5	소3-15	일반	98-170		
기정	소로	3	13	6	국지	154.3	소2-5	소3-15	일반	98-38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3	6	국지	154.3	소2-5	소3-15	일반	98-387		
기정	소로	3	14	6	국지	112.7	소2-5	소3-15	일반	98-15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4	6	국지	112.7	소2-5	소3-15	일반	98-155		
기정	소로	3	15	6	국지	255.7	중1-132	소2-5	일반	98-2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5	6	국지	255.7	중1-132	소2-5	일반	98-21		
기정	소로	3	16	6	국지	20.1	소3-12	소3-11	일반	98-4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6	6	국지	20.1	소3-12	소3-11	일반	98-47		
기정	소로	3	17	6	국지	29.7	중1-132	소3-11	일반	98-4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7	6	국지	29.7	중1-132	소3-11	일반	98-48		
기정	소로	3	18	6	국지	26.8	중1-48	소3-15	일반	98-3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8	6	국지	26.8	중1-48	소3-15	일반	98-39		
기정	소로	3	19	6	국지	66.6	중1-138	소1-3	일반	98-33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19	6	국지	66.6	중1-138	소1-3	일반	98-338		
기정	소로	3	20	6	국지	67.0	중1-138	소1-3	일반	98-44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0	6	국지	67.0	중1-138	소1-3	일반	98-443		
기정	소로	3	21	6	국지	65.1	중3-131	소1-3	일반	98-32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1	6	국지	65.1	중3-131	소1-3	일반	98-329		
기정	소로	3	22	6	국지	64.2	중3-131	소1-3	일반	98-364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2	6	국지	64.2	중3-131	소1-3	일반	98-364		
기정	소로	3	23	6	국지	123.9	중1-48	중3-131	일반	98-29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3	6	국지	123.9	중1-48	중3-131	일반	98-299		
기정	소로	3	24	6	국지	99.6	중1-48	중3-131	일반	98-31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4	6	국지	99.6	중1-48	중3-131	일반	98-310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25	6	국지	68.6	중1-48	중3-131	일반	98-32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5	6	국지	68.6	중1-48	중3-131	일반	98-321		
기정	소로	3	26	6	국지	36.6	중1-48	중3-131	일반	98-35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변경	소로	3	26	6	국지	36.6	중1-48	중3-131	일반	98-355		
기정	소로	3	27	4.4~ 5.6	특수	222.9	북성동1가 97-21	97 - 21	전용	97-21	17.2.2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7호
변경	소로	3	27	4.4~ 5.6	특수	222.9	북성동1가 97-21	북성동1가 97-21	보행자 전용	97-21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중로1-12	중로1-12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48	중로1-48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132	중로1-132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133	중로1-133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138	중로1-138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1-293	중로1-293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2-132	중로2-132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중로3-131	중로3-131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1-1	소로1-1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1-2	소로1-2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1-3	소로1-3	○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1-4	소로1-4	○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1	소로2-1	○ 선형변경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2	소로2-2	○ 선형변경	ㅇ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3	소로2-3	○ 선형변경	ㅇ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4	소로2-4	○ 선형변경	ㅇ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2-5	소로2-5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3-1	소로3-1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	소로3-2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3	소로3-3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4	소로3-4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5	소로3-5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6	소로3-6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7	소로3-7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8	소로3-8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9	소로3-9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0	소로3-10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1	소로3-11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2	소로3-12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3	소로3-13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4	소로3-14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5	소로3-15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6	소로3-16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7	소로3-17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8	소로3-18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19	소로3-19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0	소로3-20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1	소로3-21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2	소로3-22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3	소로3-23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4	소로3-24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5	소로3-25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6	소로3-26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소로3-27	소로3-27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O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³)		최초 결정일	비고
1 &	번호	기결정	T ~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H 77
		계		6,915.5	감) 45.3	6,870.2	_	
변경	1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39일원	3,393.3	증) 32.2	3,425.5	97.11.12	
변경	2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567일원	826.9	감) 31.5	795.4	07.01.15	○ 지상4층 입체화, 58면 이상
변경	3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7-16일원	2,370.0	감) 27.7	2,342.3	07.01.15	
변경	4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115일원	325.3	감) 18.3	307.0	_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증 32.2㎡) - 3,393.3㎡ → 3,425.5㎡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 <mark>감 31.5 m²)</mark> - 826.9 m² → 795.4 m²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 <mark>감 27.7 ㎡)</mark> - 2,370.0㎡ → 2,342.3㎡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4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감 18.3㎡) - 325.3㎡ → 307.0㎡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O 궤도(변경)

-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丁亚	기표 기결정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m²)	결정일	□1 J <u>r</u>	
기정	삭도	하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98-606번지)	상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산2-3번지)	도로(중로1-48호선) 공원(월미도시자연공원)	581.6	5,816	09. 11.16	중복결정, 폭원:10m	
변경	궤도	하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98-606번지)	상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산2-3번지)	도로(중로1-48호선) 공원(월미도시자연공원)	581.6	5,816			

#### - 궤도(노선)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_	궤도	○ 선형변경 ○ 명칭변경: 삭도→궤도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 궤도(승하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³)	최초 결정일	비고
		계	_	3,414.0	_	_
기정	삭도	하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606번지	794.0	09.11.16	_
		상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산2-3번지	2,620.0	09.11.16	중복결정
		계	_	3,406.2	-	_
변경	궤도	하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606번지	786.2	09.11.16	_
		상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산2-3번지	2,620.0	09.11.16	중복결정

#### - 궤도(승하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_	궤도	<ul> <li>하부승하차장 면적 변경(감 7.8㎡)</li> <li>794.0㎡ → 786.2㎡</li> <li>명칭변경: 삭도→궤도</li> </ul>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 지상 상부 통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

- 도로 1개소 : 중로 1-48호선(면적:217㎡)

- 공원 1개소 : 월미도시자연공원(면적:8,219m²)

#### O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최초	धो च	
ਾਦ	번호	시결정	종류	T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북성동1가 97-9	4,298.6	감) 88.3	4,210.3	07.01.15	폭원 = 20m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면적 변경( <mark>감 88.3㎡)</mark> - 4,298.6㎡ → 4,210.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O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 치		면적(m')		최초	비 고 (중로1-48호, 주로1-203호
十七	변호 번호	চ্চ	종류	T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н т
변경	9	월미 공원	근린 공원	북성동1가 월미산 일원	590,614 (59,692.3)	감)2,511.1 ( 감)64 )	588,102.9 (59,628.3)	2013. 6.24.	(중로1-48호, 중로1-293호, 소로2-5호, 소로3-9호 중복결정)

※ 기정은 인천 고시2013-98호에 의거함.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월미공원	○ 면적 변경(감 2,511.1㎡) - 590,614㎡ → 588,102.9㎡ ※ 지구단위구역 내(감 64㎡) - 59,692.3㎡ → 59.628.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O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기서대	위 치		면적(m')			H) T
T ਦ	구 분 보호 시설명 9	T 1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변경	1	공공공지	북성동1가 106-9일원	6,434.8	_	6,434.8	17.2.27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선형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 나.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O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 2-1-7	획지번호	위치	면적	(m²)	계획내용	비고
가다원모	국시인모	#1/1	기 정	변 경	পাৰ্থাত	P) 14
2-1-7	1	북성동 98-367	1,219.5	1,219.5	획지	
0 0 1	2	북성동 98-216	1,054.5	1,045.9	획지	
2-2-1	3	북성동 98-217	1,182.5	1,182.5	획지	
	4	북성동 98-218	1,940.5	1,940.5	획지	
2-2-2	5	북성동 98-225	993.0	993.0	획지	
	6	북성동 98-226	996.4	996.4	획지	
	7	북성동 98-227	1,082.3	1,083.7	획지	
2-2-3	8	북성동 98-228	1,138.5	1,138.5	획지	
2-2-3	9	북성동 98-230	1,151.7	1,147.6	획지	
	10	북성동 98-559	1,184.8	1,184.8	획지	
	11	북성동 98-577	1,653.0	1,653.0	획지	
2-4-1	12	북성동 98-12	3,271.1	3,271.1	획지	
	13	북성동 98-580	4,396.7	4,396.7	획지	

# - 공동개발 권장계획

		フ	정					벁	!경		
도면	가구	가구	끨	지	ਮੀ ਹ	비고 도면 번호	가구	가구	필지		비고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10177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²)	H1-TC
			98-3	482.4			1-1-1		98-3	471.9	
			97-25	166.3					97-25	108.3	
			97-14	2,406.3	구역 (선광선창	구역 [선광선창 1-1-1 1-1-1		29,659.4	97-14	2,433.1	특별계획 구역 (선광선창 부지)
1-1-1	1-1-1	29,697.2	97-15	4,334.5					97-15	4,374.0	
			97-11	6,258.2					97-11	6,245.6	
			97-9	7,475.7					97-9	7,461.0	
			97-16	8,573.8					97-16	8,565.5	
2-1-1	2-1-1	720.7	98-8	720.7	_	2-1-1	2-1-1	749.5	98-8	749.5	_
			98-503	220.4					98-503	212.9	공동개발 권장
2-1-2	2-1-2	2,131.6	98-500	220.4	공동개발 권장	2-1-2	2-1-2	2,072.4	98-500	213.0	
			98-502	220.4	[ 전상	°			98-502	213.0	

		ブ	l정					頛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ען די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บ] ¬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번호	변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98-501	220.4					98-501	213.0	
			98-52	416.7					98-52	406.7	
			98-498	416.7					98-498	406.9	
			98-499	416.6					98-499	406.9	
			98-250	165.3					98-250	180.4	
			98-251	331.2					98-251	327.4	
			98-263	165.6	공동개발 권장				98-263	167.9	공동개별 권장
			98-270	330.9				3,888.9	98-270	330.9	
			98-271	331.2					98-271	331.2	
			98-252	330.9					98-252	330.9	
2-1-3	2-1-3	3,863.4	98-253	330.9	공동개발	2-1-3	2-1-3		98-253	329.6	공동개빝
2-1-3	2-1-3	3,003.4	98-254	330.9	권장	2-1-3	2-1-3		98-254	325.9	- 권장 
			98-255	330.9					98-255	337.5	
			98-220	99.2	- 공동개발 권장				98-220	99.2	
			98-426	132.2					98-426	143.8	
			98-427	155.4					98-427	155.4	
			98-428	231.7					98-428	231.7	
			98-532	597.1					98-532	597.1	
			98-259	331.2					98-259	346.9	공동개발 권장
			98-260	281.6	n.n				98-260	291.4	
			98-261	331.2	공동개발 권장				98-261	342.3	
			98-262	330.9					98-262	325.7	
2-1-4	2-1-4	3,904.4	98-573	49.6		2-1-4	2-1-4	3,964.2	98-573	45.9	
214	2 1 1	0,304.4	98-10	495.9	공동개발		2 1 4	0,504.2	98-10	480.4	공동개빝
			98-264	661.5	권장				98-264	661.5	권장
			98-256	597.3	7 T J)W				98-256	593.3	7 F -1161
			98-446	595.0	공동개발 권장				98-446	613.0	공동개빌 권장
			98-519	230.2					98-519	263.8	
			98-336	751.2	공동개발				98-336	774.1	7 F -1161
			98-337	330.6	권장				98-337	332.8	공동개빝 권장
			98-565	573.4	고도레베				98-565	598.4	
2-1-5	2-1-5	3,590.4	98-338	671.8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	2-1-5	2-1-5	3,639.0	98-338	678.3	공동개빝
			98-434	331.3					98-434	331.3	권장
			98-464	471.0					98-464	469.1	공동개별
			98-496	461.1					98-496	455.0	-11-71
2-1-6	2-1-6	3,415.4	98-339	342.9	공동개발	2-1-6	2-1-6	3 474 0	98-339	348.5	공동개별
<u>د</u> ۱ 0	210	0,410.4	98-340	330.7	중중개발 권장	2 1 0	-6 2-1-6	-6 3,474.0	98-340	336.1	공공개발 권장

		ブ	l정					护	!경		
도면	가구	가구	끨	지	,n) =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1)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98-468	330.9					98-468	348.8	
			98-341	345.9					98-341	342.0	
			98-444	315.6	공동개발 권장				98-444	315.6	공동개별 권장
			98-495	330.6					98-495	330.6	
			98-433	474.7	n-n				98-433	481.5	»·
			98-435	481.7	공동개발 권장				98-435	500.7	공동개념 권장
			98-469	462.4					98-469	470.2	
			98-443	136.7					98-443	145.4	
			98-368	211.0	공동개발				98-368	227.5	공동개별
2-1-7	2-1-7	2,336.9	98-442	309.1	권장	2-1-7	2-1-7	2,369.2	98-442	316.2	권장
			98-463	460.6					98-463	460.6	
			98-367	1,219.5	획지				98-367	1,219.5	획지
			98-26	827.0	공동개발				98-26	811.3	공동개별
			98-560	533.0	권장				98-560	548.7	권장
2-2-1	2-2-1	4,639.3	98-213	647.7	공동개발	2-2-1	2-2-1	4 620 7	98-213	647.7	공동개념
2-2-1	2-2-1	4,039.3	98-578	394.6	권장	2-2-1	2-2-1	4,630.7	98-578	394.6	권장
			98-216	1,054.5	획지				98-216	1,045.9	획지
			98-217	1,182.5	획지				98-217	1,182.5	획지
			98-225	993.0	획지				98-225	993.0	획지
2-2-2	2-2-2	3,929.9	98-226	996.4	획지	2-2-2	2-2-2	3,929.9	98-226	996.4	획지
			98-218	1,940.5	획지				98-218	1,940.5	획지
			98-227	1,082.3	획지				98-227	1,083.7	획지
2-2-3	2-2-3	4,557.3	98-228	1,138.5	획지	2-2-3	2-2-3	4,554.6	98-228	1,138.5	획지
Z-Z-3	2-2-3	4,007.0	98-230	1,151.7	획지	2-2-3	2-2-3	4,004.0	98-230	1,147.6	획지
			98-559	1,184.8	획지				98-559	1,184.8	획지
			98-332	667.4	공동개발				98-332	637.6	공동개별
			98-335	700.2	권장				98-335	697.8	권장
			98-333	333.7					98-333	341.9	
2-2-4	2-2-4	4,192.3	98-334	829.1	공동개발 권장	2-2-4	2-2-4	4,183.6	98-334	867.7	공동개년 권장
			98-524	333.7					98-524	307.2	
			98-330	664.1	공동개발				98-330	667.3	공동개념
			98-331	664.1	권장				98-331	664.1	권장
			98-328	565.0	공동개발				98-328	574.3	공동개별
			98-329	565.0	권장				98-329	563.2	권장
2-2-5	2-2-5	3,396.6	98-325	565.0	공동개발	2-2-5	2-2-5	3,361.9	98-325	562.0	공동개발
			98-326	568.3	권장				98-326	556.7	권장
			98-324	565.0	공동개발 권장				98-324	555.0	공동개발 권장

		フ	정					Ą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비고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비고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1 117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미끄
			98-327	142.0					98-327	137.5	
			98-506	142.1					98-506	137.8	
			98-507	142.1					98-507	137.8	
			98-508	142.1					98-508	137.6	
			98-364	347.0	n.n				98-364	352.2	- F 110
			98-365	647.9	공동개발 권장				98-365	647.9	공동개별 권장
			98-552	297.6					98-552	297.6	
			98-366	568.6	공동개발				98-366	568.6	공동개빝
2-2-6	2-2-6	5,513.9	98-537	568.6	권장	2-2-6	2-2-6	5,466.9	98-537	583.8	권장
2 2 0	2 2 0	0,010.0	98-361	647.9	고도케바			0,100.3	98-361	637.7	고문제비
			98-362	647.9	공동개발 권장				98-362	625.5	공동개별 권장
			98-363	644.6					98-363	647.7	
			98-535	669.2	공동개발				98-535	647.0	공동개별
			98-536	474.6	권장				98-536	458.9	권장
			98-419	429.1	공동개발				98-419	429.1	공동개별
			98-58	429.1	권장				98-58	429.1	권장
			98-437	166.7					98-437	162.2	
			98-439	258.0	공동개발				98-439	242.9	공동개빌
			98-440	215.1	권장				98-440	215.1	권장
			98-420	544.3		_			98-420	551.8	
			98-432	391.9	공동개발				98-432	404.5	공동개빌
			98-438	118.0	권장				98-438	107.0	권장
			98-568	23.7					98-568	20.8	
			98-243 98-273	375.9	공동개발				98-243 98-273	374.1	공동개빌
			98-273	375.9 375.9	권장				98-274	373.8 385.0	권장
2-3-1 (계속)	2-3-1 (계속)	12,880.9 (계속)	98-275	346.2		2-3-1 (계속)	2-3-1 (계속)	12,955.1 (계속)	98-274	327.9	
			98-276	672.3	コニコい				98-276	688.1	코드레이
			98-277	226.5	공동개발 권장				98-277	235.1	공동개빌 권장
			98-509	165.6					98-509	161.4	
			98-244	330.5		1			98-244	332.8	
			98-278	250.6					98-278	253.0	
			98-279	220.4					98-279	211.5	
			98-280	429.7	공동개발				98-280	429.7	공동개별
			98-281	124.6	권장				98-281	132.0	공동개를 권장
			98-282	179.2					98-282	176.3	
			98-283	208.9					98-283	213.7	
			98-285	207.6					98-285	203.1	

		ブ	정					Ą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n) =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w) =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98-241	164.9					98-241	164.9	
			98-424	161.7					98-424	153.8	
			98-448	149.9					98-448	149.9	
			98-449	188.9					98-449	197.2	
			98-540	114.3					98-540	114.3	
			98-541	102.2	공동개발 권장				98-541	112.3	공동개발 권장
			98-542	101.0					98-542	98.3	
			98-543	108.3					98-543	108.3	
			98-544	108.3					98-544	108.3	
			98-545	111.3					98-545	111.3	
			98-546	126.5					98-546	131.0	
			98-242	585.2					98-242	579.1	
			98-533	888.6	공동개발				98-533	869.6	공동개빌
			98-452	150.0	권장				98-452	154.3	권장
2-3-1	2-3-1	12,880.9	98-453	147.0		2-3-1	2-3-1	12,955.1	98-453	161.9	
			98-450	149.9					98-450	146.6	
			98-451	149.9					98-451	147.2	
			98-454	287.9					98-454	302.9	
			98-455	155.9					98-455	157.7	
			98-456	144.0					98-456	144.0	
			98-457	144.0	공동개발 권장				98-457	144.9	공동개빌 권장
			98-458	144.0					98-458	144.0	
			98-459	141.0					98-459	141.0	
			98-460	135.0					98-460	135.8	
			98-461	135.0					98-461	149.5	
			98-462	141.0					98-462	154.5	
			98-268	331.2					98-268	324.6	
			98-269	217.1	공동개발 권장				98-269	226.5	공동개발 권장
			98-59	331.2					98-59	361.4	
			98-61	512.4					98-61	512.4	
			98-62	201.3					98-62	202.4	1
			98-63	330.6	공동개발 권장				98-63	333.6	공동개빌 권장
9_4 1	0_4 1	10.050.0	98-64	270.5		0_4 1	0_4 1	10.050.1	98-64	269.1	
∠-4-1	2-4-1	10,950.0	98-286	314.4		2-4-1	2-4-1	10,950.1	98-286	311.8	
			98-12	3,271.1	획지				98-12	3,271.1	획지
			98-577	1,653.0	획지				98-577	1,653.0	획지
			98-580	4,396.7	획지	]			98-580	4,396.7	획지

		ブ	정					벁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비고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비고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³)	H 124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꼬
			98-23	250.1					98-23	248.4	
0 1 1	0 1 1	1.070.4	98-80	731.9	공동개발	0 1 1	0 1 1	1.070.4	98-80	731.9	공동개빌
3-1-1	3-1-1	1,679.4	98-81	447.3	권장	3-1-1	3-1-1	1,678.4	98-81	449.7	권장
			98-569	250.1					98-569	248.4	
			98-78	581.2					98-79	581.2	
2_1_0	2_1_0	2,281.3	98-79	534.5	공동개발	3-1-2	3-1-2	2,285.2	98-78	557.5	공동개빌
3-1-2	3-1-2	2,201.3	98-77	570.2	권장	3-1-2	3-1-2	2,200.2	98-77	551.1	권장
			98-22	595.4					98-22	595.4	
			98-234	496.9	공동개발				98-234	487.6	공동개빌
3-1-3	3-1-3	2.014.9	98-233	510.4	권장	3-1-3	3-1-3	2,031.3	98-233	500.4	권장
3-1-3	3-1-3	2,014.9	98-232	511.4	공동개발	3-1-3	3-1-3	2,031.3	98-232	536.4	공동개빌
			98-25	496.2	권장				98-25	506.9	권장
			98-24	448.6					98-24	432.8	
			98-114	163.6	공동개발 권장				98-114	165.2	공동개빌 권장
3-1-4	3-1-4	1 /127 1	98-489	163.7		3-1-4	3-1-4	1,438.7	98-489	167.7	
3-1-4	3-1-4	1,437.1	98-116	161.9		3-1-4	3-1-4	1,400.7	98-116	163.7	
			98-117	340.5	공동개발 권장				98-117	346.6	공동개빌 권장
			98-493	158.8					98-493	162.7	
			98-30	236.7					98-30	233.5	
			98-101	230.1					98-101	233.7	
			98-102	228.1					98-102	238.2	
			98-103	120.0	공동개발				98-103	126.0	공동개빌
			98-104	115.7	권장				98-104	112.3	권장
			98-105	234.7					98-105	234.7	
			98-466	120.0					98-466	120.0	
			98-467	115.7					98-467	119.0	
			98-106	157.0					98-106	157.9	
3-1-5	3-1-5	3,345.2	98-409	157.4		3-1-5	3-1-5	3,370.1	98-409	159.0	
			98-413	154.0	공동개발				98-413	149.6	공동개빌
			98-414	222.1	권장				98-414	208.2	권장
			98-415	148.1					98-415	159.2	
			98-416	157.4					98-416	160.2	
			98-410	157.4					98-410	160.1	
			98-411	226.1	고도에비				98-411	231.2	고토레이
			98-412	181.2	공동개발 권장				98-412	178.8	공동개빌 권장
			98-417	157.4					98-417	161.3	
			98-418	226.1					98-418	227.2	

		ブ	]정					Ą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n) =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w)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98-31	298.2					98-31	292.6	
			98-87	345.5	공동개발				98-87	339.7	공동개빌
			98-88	312.4	권장				98-88	306.7	권장
			98-89	160.7					98-89	160.7	
			98-90	141.8					98-90	152.8	
			98-91	264.8					98-91	273.4	
			98-92	263.8	공동개발 권장				98-92	270.0	공동개빌 권장
			98-436	126.6					98-436	131.4	2.0
			98-488	160.6					98-488	154.3	
			98-93	138.8					98-93	141.1	
			98-370	138.8					98-370	141.1	
3-1-6	3-1-6	4,256.5	98-377	160.0	공동개발	3-1-6	3-1-6	4,280.6	98-377	153.9	공동개별
3-1-0	3-1-0	4,200.0	98-378	175.2	권장	3-1-0	3-1-0	4,200.0	98-378	176.8	권장
			98-379	138.8					98-379	142.8	
			98-380	138.8					98-380	142.2	
			98-371	138.8					98-371	140.8	
			98-372	138.8					98-372	140.8	
			98-373	130.6					98-373	136.4	
			98-374	138.8	고도레베				98-374	140.4	그트레버
			98-375	175.2	공동개발 권장				98-375	170.7	공동개별 권장
			98-376	161.0					98-376	156.5	
			98-381	138.8					98-381	138.8	
			98-382	138.8					98-382	140.0	
			98-383	130.9					98-383	136.7	
			98-7	6.8					98-7	6.8	
			98-74	197.4					98-74	197.4	
3-1-7	3-1-7	784.8	98-75	293.6	공동개발	3-1-7	3-1-7	778.0	98-75	278.8	공동개별
(1)	(1)		98-76	24.9	권장	(1)	(1)		98-76	32.9	권장
			98-429	110.4					98-429	98.4	
			98-430	151.7					98-430	163.7	
			98-481	162.6					98-481	162.6	
			98-32	142.3	공동개발				98-32	142.3	공동개별
3-1-7	3-1-7	1.055	98-82	165.3	권장	3-1-7	3-1-7		98-82	171.9	권장
(2)	(2)	1,653.0	98-445	142.3		(2)	(2)	1,700.3	98-445	147.6	
			98-83	159.4	공동개발				98-83	163.8	공동개별
			98-84	155.7	권장				98-84	155.7	권장
			98-85	166.8					98-85	173.9	

		ブ	l정					변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n) —	도면	가구	 가구	필	기	w) ==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번호	번호	가구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98-515	155.7					98-515	160.6	
			98-520	264.7					98-520	276.0	
			98-527	138.2					98-527	145.9	
			98-128	150.4					98-128	155.5	
			98-129	310.7					98-129	312.0	
			98-132	165.9					98-132	164.5	
			98-526	144.3	n.n				98-526	148.8	- F 110
3-1-8	3-1-8	1,659.0	98-547	210.0	공동개발 권장	3-1-8	3-1-8	1,688.2	98-547	210.0	공동개별 권장
			98-126	165.4					98-126	168.2	
			98-127	185.5					98-127	187.8	
			98-131	185.7					98-131	190.2	
			98-487	141.1					98-487	151.2	
			98-27	74.7					98-27	76.8	
			98-50	427.1	n.n				98-50	431.2	- F 100
			98-235	143.3	공동개발 권장				98-235	141.0	공동개별 권장
3-1-9	3-1-9	2,015.2	98-490	193.8		3-1-9	3-1-9	2.004.8	98-490	193.8	
0 1 3	5 1 5	2,010.2	98-491	173.0			5 1 5	2,004.0	98-491	173.0	
			98-236	506.8	고도에비				98-236	504.9	고드레네
			98-237	323.3	공동개발 권장				98-237	319.2	공동개빌 권장
			98-494	173.2					98-494	164.9	
			98-51	486.0					98-51	438.8	
			98-238	135.7	공동개발				98-238	129.7	공동개빌
			98-522	196.3	권장				98-522	188.0	권장
3-1-10	3-1-10	2,162.4	98-523	175.1		3-1-10	3-1-10	2,101.1	98-523	167.4	
			98-54	30.1	고도케바				98-54	35.0	고도케버
			98-239	669.8	공동개발 권장				98-239	645.1	공동개빌 권장
			98-240	469.4					98-240	497.1	
			98-28	172.4					98-28	184.2	
			98-175	159.2					98-175	159.2	
			98-176	159.0	공동개발				98-176	165.6	공동개빌
			98-497	159.0	권장				98-497	164.9	권장
			98-514	159.1	1				98-514	156.0	
3-1-11	3-1-11	2,300.0	98-516	172.4		3-1-11	3-1-11	2,377.7	98-516	175.0	
			98-177	318.0	공동개발				98-177	333.1	공동개별
			98-178	318.0	권장	_			98-178	334.5	권장
			98-179	160.8	공동개발				98-179	168.4	공동개빌
			98-180	361.3	권장				98-180	361.3	권장
			98-525	160.8					98-525	175.5	

		ブ	정					Ą	.경			
도면	가구 번호	가구	필	지	บ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필	지	ul –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³)	비고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²)	비고	
			98-29	154.0					98-29	154.0		
			98-398	159.0					98-398	159.0		
			98-403	172.2	공동개발				98-403	174.5	공동개빌	
			98-404	156.0	권장				98-404	158.5	권장	
			98-405	159.0					98-405	156.6		
			98-406	160.0					98-406	160.0		
			98-399	159.0					98-399	161.5		
			98-400	159.0					98-400	158.1		
			98-401	190.4	공동개발				98-401	195.8	공동개빌	
			98-402	168.3	권장				98-402	164.1	권장	
			98-407	160.0					98-407	160.0		
			98-408	154.0					98-408	159.3		
			98-169	110.4					98-169	112.1		
			98-170	232.7					98-170	232.7		
			98-171	232.7					98-171	232.7		
			98-172	74.0	2.2 권장 2.3				98-172	72.2	공동개발 권장	
R_1_19	3-1-12	5,482.2	98-173	122.2		3-1-12	3-1-12	5,492.0	98-173	121.1		
) 1 12	0 1 12	0,402.2	98-183	122.3		-		0 1 12	0 1 15	0,402.0	98-183	128.3
			98-184	180.8					98-184	173.0		
			98-528	128.3					98-528	128.3		
			98-174	227.7					98-174	225.5		
			98-187	229.1					98-187	226.3		
			98-188	229.1	고도케바				98-188	237.2	고도케비	
			98-189	229.1	공동개발 권장				98-189	229.1	공동개빌 권장	
			98-190	128.0					98-190	128.0		
			98-191	229.1					98-191	233.0		
			98-566	101.1		1			98-566	101.1		
			98-192	146.3					98-192	145.3		
			98-193	129.0					98-193	127.3		
			98-194	125.4	공동개발				98-194	120.9	공동개빌	
			98-479	165.2	권장				98-479	163.3	권장	
			98-480	165.2					98-480	181.4		
			98-562	100.1					98-562	92.6		
			98-563	123.5					98-563	119.2		
			98-384	137.2	고두케네.				98-384	141.3	고도케비	
3-1-13	3-1-13	3,183.0	98-390	155.4	공동개발 권장	3-1-13	3-1-13	3,209.9	98-390	153.8	공동개빌 권장	
			98-391	174.5					98-391	174.5		

		ブ	l정					변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n) =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w) =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98-392	137.2					98-392	141.1	
			98-393	132.9					98-393	137.9	
			98-394	137.2					98-394	139.8	
			98-395	137.2					98-395	140.8	
			98-40	132.9					98-40	137.9	
			98-385	137.2					98-385	140.9	
			98-386	136.9					98-386	138.6	
			98-387	137.2					98-387	138.3	
			98-388	175.5	공동개발 권장				98-388	175.5	공동개빌 권장
			98-389	156.4					98-389	154.5	
			98-396	137.2					98-396	140.7	
			98-397	138.2					98-397	141.7	
			98-151	355.4					98-151	347.4	
			98-152	402.0	공동개발				98-152	392.3	공동개빌
			98-153	143.3	권장				98-153	148.1	권장
			98-564	119.2					98-564	124.8	
			98-37	365.6					98-37	361.2	
			98-133	182.8					98-133	187.5	
			98-134	101.0					98-134	101.0	
			98-135	149.5	공동개발 권장				98-135	139.6	공동개빌 권장
			98-472	182.8					98-472	177.6	
			98-473	119.9					98-473	122.0	
			98-553	203.5					98-553	203.5	
			98-474	38.7					98-474	39.6	
2_1_14	3-1-14	3,117.3	98-136	108.6		2_1_14	3-1-14	3,127.0	98-136	109.8	
) 1 14	0 1 14	0,117.0	98-137	198.9		0 1 14	3 1 14	0,127.0	98-137	201.2	no
			98-138	379.8	공동개발 권장				98-138	381.6	공동개빌 권장
			98-475	133.7					98-475	134.4	
			98-476	165.6					98-476	174.9	
			98-561	198.8					98-561	200.7	
			98-141	160.1					98-141	166.5	
			98-477	142.7	공동개발				98-477	145.1	공동개빌
			98-478	117.6	권장				98-478	116.5	권장
			98-517	167.8					98-517	164.3	
			98-43	51.2	n.o				98-43	48.7	JE 3-0
8-1-15	3-1-15	2,434.8	98-48	293.9	공동개발 권장	3-1-15	3-1-15	2,448.6	98-48	293.9	공동개빌 권장
			98-55	175.9					98-55	179.9	

		ブ	l정					Ą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n) —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w)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98-207	145.5					98-207	152.5	
			98-208	291.6					98-208	291.6	
			98-209	64.1					98-209	61.6	
			98-210	421.2					98-210	428.9	
			98-211	489.9	공동개발				98-211	498.0	공동개빝
			98-212	501.5	권장				98-212	493.5	권장
			98-42	14.2					98-42	15.1	
			98-47	294.2					98-47	308.5	
			98-202	38.7	공동개발				98-202	36.3	공동개별
			98-203	278.3	권장				98-203	273.8	권장
3-1-16	3-1-16	1,611.5	98-204	157.4		3-1-16	3-1-16	1,614.6	98-204	154.6	
			98-483	157.3					98-483	151.6	
			98-205	159.5					98-205	161.8	
			98-206	352.4	공동개발 권장				98-206	352.4	공동개발 권장
			98-484	159.5					98-484	160.5	
			98-200	323.0	공동개발				98-200	397.7	공동개별
			98-201	605.0	권장				98-201	605.0	권장
0 1 17	0 1 17	1.746.5	98-197	298.9		2 1 17	0 1 17	1.055.0	98-197	318.1	
3-1-17	3-1-17	1,746.5	98-198	179.2	공동개발	3-1-17	3-1-17	1,855.8	98-198	179.2	공동개별
			98-485	170.2	권장				98-485	171.6	권장
			98-486	170.2					98-486	184.2	
			98-123	477.0	공동개발				98-123	516.2	공동개별
0_1_10	3-1-18	1.094.7	98-125	57.5	권장	2_1_10	3-1-18	1 191 /	98-125	70.5	권장
5-1-18	3-1-18	1,024.7	98-38	203.3	공동개발	3-1-16	3-1-18	1,131.4	98-38	218.5	공동개빝
			98-124	286.9	권장				98-124	326.2	권장
			98-56	504.4	공동개발				98-56	498.3	공동개별
			98-482	192.8	권장				98-482	187.7	권장
			98-297	522.0	_				98-297	511.0	_
			98-298	522.0	공동개발	1			98-298	511.2	공동개별
			98-299	522.0	권장				98-299	511.6	권장
2 0 1	2 0 1	4 240 2	98-44	526.0	공동개발	201	2 0 1	4.000.0	98-44	514.1	공동개별
3-2-1	3-2-1	4,340.3	98-287	519.7	권장	3-2-1	3-2-1	4,283.0	98-287	507.1	권장
			98-288	128.6		1			98-288	128.6	
			98-289	515.7					98-289	523.9	
			98-510	129.2	공동개발 권장				98-510	130.8	공동개별 권장
			98-511	128.6	20				98-511	130.4	7.0
			98-512	129.3					98-512	128.3	

		ブ	]정					Ą	[경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n) =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1)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비고
			98-302	416.2					98-302	437.0	
			98-303	267.4					98-303	274.1	
			98-312	144.4	공동개발 권장				98-312	146.7	공동개별 권장
			98-313	326.9					98-313	325.3	2.0
			98-529	123.0					98-529	127.1	
			98-304	267.4					98-304	270.8	
			98-305	267.4					98-305	254.1	
			98-306	280.7	공동개발				98-306	266.6	공동개별
3-2-2	3-2-2	4,006.7	98-309	267.4	권장	3-2-2	3-2-2	4,039.5	98-309	243.4	권장
			98-310	267.4					98-310	260.2	
			98-311	267.4					98-311	272.6	
			98-291	134.2					98-291	130.6	
			98-292	323.0					98-292	368.4	
			98-293	158.5	공동개발				98-293	150.2	공동개빝
			98-504	158.5	권장				98-504	150.5	권장
			98-505	202.7					98-505	191.4	
			98-521	134.2					98-521	170.5	
			98-314	277.4					98-314	296.3	1
			98-315	267.4	공동개발   권장				98-315	278.2	공동개별 권장
			98-323	302.5					98-323	300.0	
			98-316	267.4					98-316	277.9	
			98-317	267.4	공동개발				98-317	277.8	공동개별
3-2-3	3-2-3	3,001.7	98-321	267.8	권장	3-2-3	3-2-3	3,262.7	98-321	263.9	권장
			98-322	267.8					98-322	265.4	
			98-11	274.4					98-11	480.4	
			98-318	267.4	공동개발				98-318	277.8	공동개별
			98-320	267.8	권장				98-320	263.7	권장
			98-345	274.4					98-345	281.3	
			98-350	290.9	n-n				98-350	314.3	
			98-351	267.8	공동개발 권장				98-351	263.0	공동개별 권장
			98-356	284.3					98-356	295.3	
3-2-4	3-2-4	1,867.8	98-352	267.8		3-2-4	3-2-4	1,901.9	98-352	267.8	
			98-353	234.7	공동개발				98-353	234.7	공동개빝
			98-354	254.5	권장				98-354	254.5	권장
			98-355	267.8					98-355	272.3	
3-2-5	3-2-5	757.0	98-357	161.9	공동개발	3-2-5	3-2-5	840.1	98-357	179.8	공동개빝
J-Z-5	3-2-3	151.0	98-358	138.0	권장	3-2-3	3-2-3	040.1	98-358	264.4	권장

		フ	정					Ą	!경		
도면	가구	가구 면적(m')	필	지	비고	도면	가구	가구 면적(m³)	필	.지	비고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²)	1 11 11	번호	번호	면적(m')	위치	면적(m')	H1-TC
			98-359	137.3					98-359	158.8	
			98-538	127.2					98-538	135.2	
			98-551	92.6					98-551	101.9	
4-1-1	4-1-1	486.0	98-441	486.0	_	4-1-1	4-1-1	504.9	98-441	504.9	_
			106-5	249.5					106-5	229.6	
			106-6	1,454.2					106-6	1,347.3	
			106-7	8,617.3	트버ᅰ히				106-7	8,617.3	트버케히
5-1-1	5-1-1	26,081.0	106-8	11,820.6	특별계획 구역	5-1-1	5-1-1	25,809.9	106-8	11,820.6	특별계획 구역
3 1 1	J 1 1	20,001.0	106-10	327.2	(갑문친수 공간)	0 1 1	0 1 1	25,009.9	106-10	327.2	(갑문친수 공간)
			106-11	1,233.6	0.11)				106-11	1,233.6	011)
			106-12	552.0					106-12	552.0	
			산2-10	1,826.6					125-5	1,682.3	
			102-2	29,237.1	트버ᅰ히				102-2	29,280.2	트버케히
6-1-1	6-1-1	49,549.3	102-11	13,143.7	특별계획 구역	6-1-1	6-1-1	49.487.2	102-11	13,184.5	특별계획 구역
0 1 1	0 1 1	+3,043.3	102-32	1,199.8	(이민사 박물관)	0 1 1	0 1 1	+3,401.2	102-32	1,201.4	(이민사 박물관)
			산1	5,968.7	120)				125	5,821.1	16.07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1-1	1-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1	2-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2	2-1-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3	2-1-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4	2-1-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5	2-1-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6	2-1-6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1-7	2-1-7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1	2-2-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2	2-2-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3	2-2-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4	2-2-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2-5	2-2-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2-2-6	2-2-6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3-1	2-3-1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2-4-1	2-4-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	3-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2	3-1-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3	3-1-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4	3-1-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5	3-1-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6	3-1-6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7	3-1-7 (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1) 3-1-7 (2)	(1) 3-1-7 (2)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8	3-1-8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9	3-1-9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0	3-1-10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1	3-1-11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2	3-1-12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3	3-1-13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4	3-1-14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5	3-1-15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6	3-1-16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7	3-1-17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1-18	3-1-18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1	3-2-1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2	3-2-2	○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3	3-2-3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4	3-2-4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3-2-5	3-2-5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4-1-1	4-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5-1-1	5-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6-1-1	6-1-1	○면적 변경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변경

# O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1-1-1	북성동1가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98-3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참조)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70% 이하	
2-1-1	북성동1가 98-8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2m, 3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2-1-2	북성동1가 98-5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북성동1가 98-532 일대 (결정도면 참조)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1-3		높 이	○ GL+30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2-1-4	북성동1가 98-10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Į.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보셔드1기 00 424 이미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434 일대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2-1-5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0.1.0	북성동1가 98-444 일대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2-1-6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443 일대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2-1-7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북성동1가 98-26일대 (결정도면 참조)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2-2-2	북성동1가 98-22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2-2-3	북성동1가 98-22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2-2-4	2-2-4 북성동1가 98-524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 기준 350% 이하	
2-2-5	2-2-5 북성동1가 98-50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군 5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2-2-6	북성동1가 98-50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59 일대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2-3-1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 )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1	
		건폐율	○ 70% 이하	
2-4-1	북성동1가 98-6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8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申五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3-1-1 북성동1가 98-569 일대 (결정도면 참조)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2 북성동1가 98-78 일대 (결정도면 참조)	북성동1가 98-78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3	북성동1가 98-2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4	북성동1가 98-49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1-5 북성동1가 98-101 일대 (결정도면 참조) 높 (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GL+34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3-1-6 북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북성동1가 98-436 일대 (결정도면 참조)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GL+34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북성동1가 98-16 일대 (결정도면 참조)	건폐율	○ 70% 이하	
3-1-7 (1)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GL+26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7 (2)	북성동1가 98-76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8	북성동1가 98-48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9	북성동1가 98-27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0	북성동1가 98-54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70% 이하	
3-1-11	북성동1가 98-17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GL+42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3-1-12	북성동1가 98-172 일대 (결정도면 참조)	포 이	○ GL+42m 이하 - 98-29, 98-398, 98-403, 98-404, 98-405, 98-406, 98-399, 98-400, 98-401, 98-402, 98-407, 98-408, 98-169, 98-183, 98-170, 98-171, 98-172, 98-184, 98-173, 98-528 ○ 3-4-12 GL+46m 이하 - 98-174, 98-187, 98-188, 98-189, 98-190, 98-191, 98-566, 98-192, 98-193, 98-194, 98-479, 98-480, 98-562, 98-563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3	북성동1가 98-15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북성동1가 98-474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4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5	북성동1가 98-4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6	북성동1가 98-4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7	북성동1가 98-485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6m 이하 (결정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북성동1가 98-125 일대 (결정도면 참조)	건폐율	○ 70% 이하	
3-1-18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3-2-1	북성동1가 98-511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용 도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ㅇ ㅗ 건폐율	○ 70% 이하	
3-2-2	북성동1가 98-529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설/8조현 점조)	높 이	○ 상한 800% 이하 ○ GL+50m 이하	
		<sup>표</sup> 이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북성동1가 98-322 일대 (결정도면 참조)	건폐율	○ 70% 이하	
3-2-3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3-2-4	북성동1가 98-35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3-2-5	북성동1가 98-551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D	
		건폐율	○ 60% 이하	
4-1-1	북성동1가 98-441	용적률	○ 300% 이하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5-1-1	북성동1가 106-8 일대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3-1-1	(결정도면 참조)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기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6-1-1	북성동1가 102-2 일대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0-1-1	(결정도면 참조)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기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북성동1가 98-39 일원 (결정도면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1		용적률	○ 540% 이하	
1		높 이	○ GL+2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2	북성동1가 98-567 일원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540% 이하	
2	(결성노면 참소)	높 이	○ GL+2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98-16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3	일원	용적률	○ 540% 이하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22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4	북성동1가 98-115 (결정도면 참조)	용적률	○ 540% 이하	
-±	(5.07.5.837)	높 이	○ GL+24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 건축물의 높이계획과 관련하여 본 지구내 건축 및 개발시는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건축허가 전 협의를 통해 월미RS의 관제범위와 건축물의 상충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O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차량동선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begin{bmatrix} 1-1-1, \ 2-1-1, \ 2-1-2, \ 2-2-1, \\ 2-3-1, \ 2-4-1, \ 3-1-1, \ 3-1-2, \\ 3-1-7(1), \ 3-1-17, \ 3-2-1, \\ 3-2-2, \ 3-2-3, \ 3-2-4, \ 3-2-5 \end{bmatrix} $	결정도면	차량진출입	○주요 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참조	불허구간	- 2-1-2, 98-498 차량출입구 제외

#### - 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2-1-3, 2-1-4, 2-1-5, 2-1-6, 2-4-1	결정도면	주차장 진입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 (공동개발시 미적용)
2-3-1	참조	공동 출입로	○필지별 개발시 또는 공동개발시 주차장 진출입 공간을 공동으로 설치
98-255, 98-259, 98-338, 98-339, 98-444, 98-419, 98-285, 68-61	결정도면 참조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구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조성시 적용

#### - 대지 내 공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천면 공지	<ul> <li>조성방법</li> <li>인도와 접하는 경우나 월미 문화의 거리변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차도 또는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인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특별계획구역 S1(1-1-1), 3호 주차장 서측 소로 1-1호선변의 15m 폭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대크 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며,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계획 수립시 이를 결정</li> <li>전면공지 조성시는 인접한 차도 또는 보도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li> <li>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건축물의 지하구조물,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li> <li>전면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도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li> </ul>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ul> <li>○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가 계획된 대지에서는 주차를 위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조성하여야 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 조성방법</li> <li>- 결정도에서 정한 위치에 도로에 준하여 포장 등을 하여 조성</li> <li>- 지상부에서 8m 높이까지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주차출입구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함</li> <li>○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단, 공동개발이 계획된 일단의 필지 전체가 공동으로 개발되어 맹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부여하지 않음)</li> <li>○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개 공지	<ul> <li>○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규정을 준수</li> <li>○ 공개공지는 민간부문에서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공개공지는 지상부에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중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는 교차지점에 설치하도록 함</li> <li>○ 조성방법</li> <li>─ 공개공지 조성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함</li> <li>─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시설을 설치하도록 함</li> <li>○ 공개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도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li> </ul>
			○ 공개공지의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대지의 조경	제22조 및「건축법」제42조 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적용  ○ 수종은 인천시 향토수종을 주 수종으로 하되 계절감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식재를 하고, 수경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 대지의 조경을 전면도로변 및 가각부에 설치시 용적률 완화 부여  ○ 대지의 조경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공공 행로 보통 통	<ul> <li>○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의 실외 또는 실내에 규정된 폭원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함</li> <li>○ 조성방법</li> <li>-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연접대지간 단차가 없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li> <li>-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 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 공간 등 보행통행시 장애가되는 공간과는 차폐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바닥재료 선정 및 포장을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은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li> <li>○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옥상 녹화	<ul> <li>○옥상녹화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의 인정면적은 옥상녹화 조성면적 가운데 계단탑, 설비면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li> <li>○옥상에 녹화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옥상녹화면적의 100분의 50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li> <li>○옥상녹화를 조성한 대지는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적률 완화 부여</li> </ul>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11- 1	, .	/ II - II O
		1- 10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 되는 곳을 선정
		녹색 주차장	○잔디는 주차면보다 1~2cm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1.10	○녹색주차장 설치시 설치면적에 의해 용적률 완화 부여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권장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
		녹색 건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녹색건축 인증을 권장
		인증	○녹색건축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층 바닥 높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는 상업용도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외벽처리	<ul> <li>● 벽면처리의 통일성</li> <li>-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조화 유지</li> <li>● 개구부 없는 벽면의 처리</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폭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가로노출 불가</li> <li>● 개구부</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설치 불가</li> <li>● 투시벽</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li> <li>○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li> <li>-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li> <li>○ 셔터</li> <li>- 폭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li> <li>지하층 출입구의 설치</li> <li>-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 설치 불가</li> </ul>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 옥외광고물  - 돌출간판은 1개 건물에 1줄만 설치하여야 함. 돌출간판의 규격은 건물높이가 1층 이하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1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2m 이내 크기로 제한  - 애드벌룬,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공연간판은 설치를 금지  - 기타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표시방법을 준함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의 지번표시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표시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 및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
		야간 경관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하는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조명의 방향은 상향 권장)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
		건축물 형태	○ 건축물의 형태가 탑상형으로 건축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녹지, 휴게소, 광장 등)가 확보 가능토록 건축
		경사 지붕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가로경관이나 옥상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경사형 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상기의 건축물 외관에 대한 규제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준수
		1층 전면부 입면 처리	○ 1층 층고 - 1층의 층고는 인접건물 1층 층고와 10cm 이상 차이를 둘 수 없음 - 단, 인접 건물과 기능상의 차이가 확연하거나 지형상 층고의 통일이 어렵다고 당해 건축위원회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
			○외벽면 재료 - 2층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심의시 인접한 건물(좌우 각 3개씩)의 입면색채표본과 대상지 건축물의 1층 전면 색채표본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개구부 - 1층 전면에는 투시형태의 개구부 설치 권장

#### - 지하공간에 관한 계획

위치(대상지)	구 분	계 획 내 용					
월미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역	지하층 건축물	○지하층 건축물 용도는 지상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용도를 제한					
17 27	용도 불허	○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내용 변경시 이에 따름					

- O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 O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O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조서

	- 트립계획부탁의 시장에 관한 결정조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1.	개발	·방향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참고) ○개발방향 - 대규모 이전적지에 대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거점개발 - 숙박·위락·문화 복합기능 부여			
		용도	허용	<ul>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17호 공장 가운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단, 인천광역시 조례 제3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li> </ul>			
S1	완충 녹지1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건폐율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용 2	적률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0]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축물 태	○ 해안변 건축입면부 차경 확보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소로1-1호선변 15m			
		차량	동선	○ 중로1-22호선변 차량출입구 2개소 허용			
		주 <i>?</i>	<b>하</b> 장	○주차장용지 15%이상 의무 확보			

- 주)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등)
  - 3. 1호 완충녹지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부여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개발방향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개발방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이후 본 지침 적용 가능 - 단기방안 : 매립목적 범위 내에서 해양박물관 설치 - 장기방안 : 해양박물관과 연계한 관광복합컴플렉스 및 친수공간 으로 거점개발 유도			
S2	5-1-1	허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단, 지하층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수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지하층의 재해 안전성이 확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			
		건피	계율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용 2	덕률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노 이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건축	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5m, 해안변 5m			
		공공보	행통로	○평화의 등대 연계			

- 주) 1. 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에 투자유치 예정인 "인천해양박물관" 사업계획을 반영
  - 2.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3.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항만공항시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개발방향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개발방향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월미공원에서 제척) 후 적용 가능 - 단기방안 : 용도지역 변경전까지 근린공원 유지 - 장기방안 : 해양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거점 개발 유도		
S3	6-1-1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건폐율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석률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높	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건축	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5m		
		공공보	행통로	○이민사박물관역~이민사박물관 연계		

- 주)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등)
  - 3. 특별계획구역 내 이민사박물관은 존치

#### 마.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O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완화기준	비고	
コヒ	-i) HJ.	획지계획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획지계획 준수시 적용	
55	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공동개발 적용 면적 ÷ 총 공동개발 계획 면적) × 0.2	○ 공동개발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	
건축물	권장 용도	전층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연면적 ÷ 건축연면적) × 0.2	○총 연면적 20% 이상시 인정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용도	용도	1층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1층 권장용도 연면적 ÷ 1층 건축 연면적) × 0.2	○ 1층 연면적 30% 이상시 인정 ○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공개 공지	위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_	
대지내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a	○필로티 a=1.2, 개방형 a=2.0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위치 및 규모 준수·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필로티 a=1.2, 개방형 a=2.0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조성시	_		
대지의 조경			○기준용적률 × 0.025	_	
	옥상 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3	○ 법적 조경면적 제외	
	녹색 건축	인증시	<ul> <li>최우수: 기준용적률 × 0.12</li> <li>○우수: 기준용적률 × 0.08</li> <li>○우량: 기준용적률 × 0.04</li> </ul>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시	○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적용	
	녹색 주차장	조성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_	
주차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구	출입구 조성·개방시	○기준용적률 × 0.1	○결정도상 적용 대지	
및 차량 동선	부설 주차장 확보	법정주차 대수 15% 이상 추가 확보시	○기준용적률 × 0.1	-	

- 주) 1.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계획수립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 2. 가구단위 공동개발시는 별도의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
  - 3.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Sigma$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 4. 공동개발 면적이란 권장하고 있는 공동개발계획내에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선택적 공동개발을 말함
  - 5.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 6.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전면공지가 공동주차진출입로와 중복되어 공동주차진출입로로 조성할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인센 티브는 중복 적용함

#### O 가구단위 공동개발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	분	완화기준	비고	
공동	공동개발 가구 전체 공동개발시		○기준용적률 × 0.2	○가구내 전체필지를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추물 도	주거복합 건축물 개발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연면적 ÷ 건축연면적) × 0.2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개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_	
대지내 공지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a	○ 공람시 : 필로티a=1.2, 개방형 a=2.0	
	건축 전면공지 ㅇ금 회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한계선 조성시 × 2.0		-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	전면가로 및 가각부 조성시	○기준용적률 × 0.025	_	
	옥상 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3	○법적 조경면적 제외	
환경	녹색 건축	인증시	○최우수 : 기준용적률 × 0.12 ○우수 : 기준용적률 × 0.08 ○우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천36 친화적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시	○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적용	
	녹색 주차장			_	
주차 및 구차장 차량 동선 <sup>확보</sup> 이상 추가 확보시 ○기준용적률 × 0.1		○기준용적률 × 0.1	_		

- 주) 1. 가구단위 공동개발시는 본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만 적용하며 일반적 인센티브를 중복적용하지 않음
  - 2.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sum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le 허용용적률$
  -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전면공지가 공동주차진출입로와 중복되어 공동주차진출입로로 조성할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인센 티브는 중복 적용함
  - O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5 <math> imes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imes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이내

## ※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없음)

	구분	용 도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1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 가구단위 공동개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C2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구분	용 도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3	허용용도	<ul> <li>○ 가구단위 공동개발시</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1호 단독주택(단, 기존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받은 연면적에 한하여 허용)</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16호 위락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ul>
	권장용도 불허용도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전충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4	허용용도	<ul> <li>○ 가구단위 공동개발시</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li> <li>○ 가구단위 공동개발 이외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16호 위락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구분	용도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5	허용용도	<ul>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16호 위략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용도	<ul> <li>○ 1층 권장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전층 권장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o 해당사항 없음
D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P	허용용도	○ 해당사항 없음
1	권장용도	○해당사항 없음
	불허용도	○ 해당사항 없음

#### 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1. 공개공지의 위치 ·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2. 대지의 조경 위치 ·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3.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4.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 5.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6.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 5. 지형도면: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 구역(S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S2)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3**032-440-4623, 4632), 중구청 (도시개발과, **3**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6.28.

# 인 천 광 역 시 장

##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S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2. 위 치

- 용도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6-7번지 일원
- 월미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S2) 세부개발계획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분		면 적(m²)	구성비(%)	비고	
7	正	기정	변경	변경 후	7 78 41(70)	비끄
햣	계	24,298.0	-	24,298.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24,298.0	24,298.0	100.0	
미지정	미지정	24,298.0	감) 24,298.0	-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도면 표시 위 치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면적 (㎡)	(%)	결정(변경)사유	
1	중구 북성동1가 106-7번지 일원	미지정	일반 상업 지역	24,021.3	1,000	○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자 ○ 매립목적, 도시기본계획, 인접지역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을 결정	
2	중구 북성동1가 106-6번지 일원	미지정	일반 상업 지역	276.7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부지와 연접한 용도지역이 미지정 된 도로에 대해 인근 용도지역과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을 결정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그 <b>여</b> H	구역명 위치		면 적(㎡)			
표시 번호	T 4 6	カヘ	기정	변경	변경후		
	월미지구단위 계획구역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348,108.2	-	348,108.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 고
	l 판	기정	변경	변경 후	78 H(70)	P)
	합계	348,108.2	-	348,108.2	100.0	
주거	준주거지역	504.9	-	504.9	0.1	
상업	일반상업지역	201,009.2	증) 24,298.0	225,307.2	64.7	
공업	일반공업지역	1,221.6	-	1,221.6	0.4	
ОН	준공업지역	47,277.4	-	47,277.4	13.6	
녹지	보전녹지지역	67,143.7	_	67,143.7	19.3	
	미지정	30,951.4	감) 24,298.0	6,653.4	1.9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	위치	용도	지역	면적(m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T/\/	기정	변경	인격(m)	중석활(%)	설생(현생/사파
-	중구 북성동1가 106-7번지 일원	미지정	일반 상업 지역	24,298.0	100	월미도 갑문매립지(국립 인천해양박물관 예정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 결정 내용 반영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m²)	최초결정일	비고
-	_	고도지구	고도지구	북성동1가 98-50번지 일원	GL+50m 이하	187,418.4	1984. 8.14. (인고 제770호)	

## - 보호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	_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항동7가 27-10번지 일원	3,201,054.0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593㎡ 포함)	1965. 7.14.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 도로

# - 도로총괄표

O PH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4	7,865.2	92,479.8	10	4,366.2	66,743.6	6	638.3	6,719.8	28	2,860.7	19,016.4
중로	8	4,032.4	65,126.8	6	3,640.4	59,720.8	1	162.0	2,640.3	1	230.0	2,765.7
소로	36	3,832.8	27,353.0	4	725.8	7,022.8	5	476.3	4,079.5	27	2,630.7	16,250.7

## ※ 연장 및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3	규 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1 1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0	(m)	/   T	O 1	형태	경과지	결정일	H1.77
	중로	1	12	20	국지	1,485 (398.6)	대2-17	중1-138	일반	98-65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1	48	20	국지	2,555 (906.3)	대2-17	대2-17	일반	산2-12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1991-97호
	중로	1	132	20	국지	300	중1-48	중1-138	일반	98-53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1	133	20	국지	245	중1-132	중1-12	일반	98-49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1	138	20	국지	1,485	중1-12	중1-48	특수	98-13	75.5.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1	293	20	국지	305.5	중1-48	중1-12	일반	98-3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중로	2	132	15	국지	162	중1-48	중1-138	일반	98-57	69.1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중로	3	131	12	국지	230	중1-48	중1-132	일반	98-290	00.3.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33호
	소로	1	1	10	국지	272	중1-12	북성동1가 97-25	일반	97-1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1	2	10	국지	199.8	중1-132	중1-12	일반	98-22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л н		Ş	7 5	1_	키노	연장	-J 7J	スカ	사용	주요	최초	nj –i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결정일	비고
	소로	1	3	10	국지	186.5	중1-132	중2-132	일반	98-326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1	4	10	국지	67.5	중1-138	중1-48	일반	98-6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1	10	국지	60.2	중1-12	소1-2	일반	98-25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2	10	국지	65.7	중1-133	소1-2	일반	98-21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3	8	국지	65.1	중1-138	소1-2	일반	98-25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4	8	국지	65.3	중1-133	소1-2	일반	98-22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2	5	8	국지	220.0	중1-133	중1-293	일반	98-3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1	6	국지	32.3	중1-12	소3-4	일반	98-2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2	6	국지	29.6	중1-12	소3-4	일반	98-7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3	6	국지	30.1	중1-133	소3-4	일반	98-2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4	6	국지	217.0	중1-293	소2-5	일반	98-3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5	6	국지	96.1	소2-5	소3-4	일반	98-11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6	6	국지	110.9	소2-5	소3-4	일반	98-92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7	6	국지	126.5	소2-5	소3-4	일반	98-84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8	6	국지	21.3	소3-9	소3-7	일반	98-12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9	6	국지	115.2	중1-293	소2-5	일반	98-1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10	6	국지	30.0	중1-133	소3-11	일반	98-5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11	6	국지	215.9	소2-5	소3-15	일반	98-18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소로	3	12	6	국지	192.0	소2-5	소3-15	일반	98-17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3	구 도	<u> </u>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3	13	6	국지	154.3	소2-5	소3-15	일반	98-38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4	6	국지	112.7	소2-5	소3-15	일반	98-15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5	6	국지	255.7	중1-132	소2-5	일반	98-2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6	6	국지	20.1	소3-12	소3-11	일반	98-47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7	6	국지	29.7	중1-132	소3-11	일반	98-4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8	6	국지	26.8	중1-48	소3-15	일반	98-3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19	6	국지	66.6	중1-138	소1-3	일반	98-338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0	6	국지	67.0	중1-138	소1-3	일반	98-443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1	6	국지	65.1	중3-131	소1-3	일반	98-32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2	6	국지	64.2	중3-131	소1-3	일반	98-364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3	6	국지	123.9	중1-48	중3-131	일반	98-299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4	6	국지	99.6	중1-48	중3-131	일반	98-310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5	6	국지	68.6	중1-48	중3-131	일반	98-321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6	6	국지	36.6	중1-48	중3-131	일반	98-355	07.1.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기정	소로	3	27	4.4~5.6	특수	222.9	북성동1가 97-21	북성동1가 97-21	보행자 전용	97-21	17.2.2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7호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रो स्नेच्ने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 고
一个记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1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39일원	3,425.5	-	3,425.5	97.11.12.	
	2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567일원	795.4	-	795.4	07.01.15.	○ 지상4층 입체화, 58면 이상
	3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7-16일원	2,342.3	-	2,342.3	07.01.15.	
	4	노외주차장	북성동1가 98-115일원	307.0	-	307.0	_	

# ○ 궤도

# - 궤도(노선)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기서머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고
丁七	표시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m²)	결정 일	비 고
_	-	궤도	하부 승하차장 (북성동1가 98-606번지)	(브서도1기	도로(중로1-48호선) 공원(월미도시자연공원)	581.6	5,816	09. 11.16.	중복결정, 폭원:10m

# - 궤도(승하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3,406.2	-	-
-	-	궤도	하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606번지	786.2	09.11.16.	-
			상부 승하차장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산2-3번지	2,620.0	09.11.16.	중복결정

## ※ 지상 상부 통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

- 도로 1개소: 중로 1-48호선(면적: 217m²)

- 공원 1개소: 월미도시자연공원(면적: 8,219m²)

# ○ 녹지

7 13	도면표시 번호	al 서 H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	मो न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시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	1	녹지	완충 녹지	북성동1가 97-9	4,210.3	-	4,210.3	07.01.15.	폭원 = 20m

# ○ 공원

N	도면표시	표시 그 이 그 시설의 이 그			면적(m²)				
구분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	9	월미 공원	근린 공원	북성동1가 월미산 일원	588,102.9 (59,628.3)	-	588,102.9 (59,628.3)	′13. 6.24.	(중로1-48호, 중로1-293호, 소로2-5호, 소로3-9호 중복결정)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 공공공지

7 13	도면표시	시서며	시서면	시서대	지서田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1 1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H  <u>1</u> '				
_	1	공공공지	북성동1가 106-9일원	6,434.8	_	6,434.8	'17. 2.27.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4)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m²)	계획내용	비고
2-1-7	1	북성동 98-367	1,219.5	획지	
2-2-1	2	북성동 98-216	1,045.9	획지	
2-2-1	3	북성동 98-217	1,182.5	획지	
	4	북성동 98-218	1,940.5	획지	
2-2-2	5	북성동 98-225	993.0	획지	
	6	북성동 98-226	996.4	획지	
	7	북성동 98-227	1,083.7	획지	
2-2-3	8	북성동 98-228	1,138.5	획지	
2-2-3	9	북성동 98-230	1,147.6	획지	
	10	북성동 98-559	1,184.8	획지	
	11	북성동 98-577	1,653.0	획지	
2-4-1	12	북성동 98-12	3,271.1	획지	
	13	북성동 98-580	4,396.7	획지	

# - 공동개발 권장계획

<b></b>	가구	가구	) j	달지	
도면 번호	번호	가구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	471.9	
			97-25	108.3	
			97-14	2,433.1	
1-1-1	1-1-1	29,659.4	97-15	4,374.0	특별계획구역
			97-11	6,245.6	(선광선창부지)
			97-9	7,461.0	
			97-16	8,565.5	
2-1-1	2-1-1	749.5	98-8	749.5	-
			98-503	212.9	
			98-500	213.0	
			98-502	213.0	
2-1-2	2-1-2	2,072.4	98-501	213.0	공동개발권장
			98-52	406.7	
			98-498	406.9	
			98-499	406.9	
			98-250	180.4	
			98-251	327.4	
			98-263	167.9	공동개발권장
			98-270	330.9	
			98-271	331.2	
			98-252	330.9	
2-1-3	2-1-3	3 888 0	98-253	329.6	공동개발권장
2-1-3	2-1-3	3,888.9	98-254	325.9	0 0 11 2 12 0
			98-255	337.5	
			98-220	99.2	
			98-426	143.8	
			98-427	155.4	공동개발권장
			98-428	231.7	
			98-532	597.1	
			98-259	346.9	
			98-260	291.4	
			98-261	342.3	공동개발권장
			98-262	325.7	
2-1-4	2-1-4	3,964.2	98-573	45.9	
2-1-4	2-1-4	J,304.2	98-10	480.4	공동개발권장
			98-264	661.5	ㅇ ㅇ / 미 큰 년 'ㅇ
			98-256	593.3	
			98-446	613.0	공동개발권장
			98-519	263.8	

도명	가구	가구	필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36	774.1	
			98-337	332.8	공동개발권장
			98-565	598.4	
2-1-5	2-1-5	3,639.0	98-338	678.3	고도에버리기
			98-434	331.3	공동개발권장
			98-464	469.1	그 드레비 키키
			98-496	455.0	공동개발권장
			98-339	348.5	
			98-340	336.1	공동개발권장
			98-468	348.8	
			98-341	342.0	
2-1-6	2-1-6	3,474.0	98-444	315.6	공동개발권장
			98-495	330.6	
			98-433	481.5	
			98-435	500.7	공동개발권장
			98-469	470.2	
			98-443	145.4	
			98-368	227.5	고도에버니기기
2-1-7	2-1-7	2,369.2	98-442	316.2	공동개발권장
			98-463	460.6	
			98-367	1,219.5	획지
			98-26	811.3	공동개발권장
			98-560	548.7	<u> </u>
2-2-1	2-2-1	4,630.7	98-213	647.7	공동개발권장
2-2-1	2-2-1	4,050.7	98-578	394.6	ठ ठेंगाच ए'ठ
			98-216	1,045.9	획지
			98-217	1,182.5	획지
			98-225	993.0	획지
2-2-2	2-2-2	3,929.9	98-226	996.4	획지
			98-218	1,940.5	획지
			98-227	1,083.7	획지
2-2-3	2-2-3	4,554.6	98-228	1,138.5	획지
223	223	4,004.0	98-230	1,147.6	획지
			98-559	1,184.8	획지
			98-332	637.6	공동개발권장
			98-335	697.8	이 이/미르 단 이
			98-333	341.9	
2-2-4	2-2-4	2-2-4 4,183.6	98-334	867.7	공동개발권장
			98-524	307.2	
			98-330	667.3	공동개발권장
			98-331	664.1	O O/II & C O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nl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28	574.3	
			98-329	563.2	공동개발권장
			98-325	562.0	
			98-326	556.7	공동개발권장
2-2-5	2-2-5	3,361.9	98-324	555.0	
			98-327	137.5	
			98-506	137.8	공동개발권장
			98-507	137.8	0 0 1 1 2 2 0
			98-508	137.6	
			98-364	352.2	
			98-365	647.9	공동개발권장
			98-552	297.6	
			98-366	568.6	고드레베리리
			98-537	583.8	공동개발권장
2-2-6	2-2-6	5,466.9	98-361	637.7	
			98-362	625.5	공동개발권장
			98-363	647.7	
			98-535	647.0	== 3.3 3.3
			98-536	458.9	공동개발권장
			98-419	429.1	
			98-58	429.1	공동개발권장
			98-437	162.2	
			98-439	242.9	
			98-440	215.1	공동개발권장
			98-420	551.8	
			98-432	404.5	
			98-438	107.0	공동개발권장
			98-568	20.8	
			98-243	374.1	
			98-273	373.8	공동개발권장
2-3-1	2-3-1	12,955.1	98-274	385.0	
(계속)	(계속)	(계속)	98-275	327.9	
			98-276	688.1	공동개발권장
			98-277	235.1	
			98-509	161.4	
			98-244	332.8	
			98-278	253.0 211.5	
			98-279 98-280	429.7	
			98-280	132.0	공동개발권장
			98-282	176.3	
			98-283	213.7	
			98-285	203.1	
			JU 200	200,1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N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241 98-424	164.9 153.8	
			98-448	149.9	
			98-449	197.2	
			98-540	114.3	
			98-541	112.3	공동개발권장
			98-542	98.3	
			98-543	108.3	
			98-544	108.3	
			98-545	111.3	
			98-546	131.0	
			98-242	579.1	
			98-533	869.6	공동개발권장
			98-452	154.3	0 0/11 2 2 0
2-3-1	2-3-1	12,955.1	98-453	161.9	
			98-450	146.6	
			98-451	147.2	
			98-454	302.9	
			98-455	157.7	
			98-456	144.0	그 드레비키키
			98-457	144.9	공동개발권장
			98-458 98-459	144.0	
			98-459	141.0 135.8	
			98-461	149.5	
			98-462	154.5	
			98-268	324.6	
			98-269	226.5	공동개발권장
			98-59	361.4	0 0/11 2 2 0
			98-61	512.4	
			98-62	202.4	
					고도케버리고
			98-63	333.6	공동개발권장
2-4-1	2-4-1	10,950.1	98-64	269.1	
		,	98-286	311.8	
			98-12	3,271.1	획지
			98-577	1,653.0	획지
			98-580	4,396.7	획지
			98-23	248.4	
211	0 1 1	1 670 4	98-80	731.9	고도레비크기
3-1-1	3-1-1	1,678.4	98-81	449.7	공동개발권장
			98-569	248.4	
	3-1-2 3-1-2		98-79	581.2	
3_1_9		2,285.2	98-78	557.5	공동개발권장
312	J 1 Z	۷,۷00.۷	98-77	551.1	ㅇㅇ/미긛 딘´ὄ
			98-22	595.4	
			98-234	487.6	공동개발권장
3-1-3	3-1-3	2,031.3	98-233	500.4	ㅇㅇ/미린 딘'ӧ
0-1-9	2-1-2	۷,001.3	98-232	536.4	고도게바긔기
			98-25	506.9	공동개발권장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v1 =
번호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98-24	432.8	
		1 420 7	98-114	165.2	공동개발권장
0.1.4	0.1.4		98-489	167.7	
3-1-4	3-1-4	1,438.7	98-116	163.7	
			98-117	346.6	공동개발권장
			98-493	162.7	
			98-30	233.5	
			98-101	233.7	
			98-102	238.2	
			98-103	126.0	고도케바리자
			98-104	112.3	공동개발권장
			98-105	234.7	
			98-466	120.0	
			98-467	119.0	
			98-106	157.9	
3-1-5	3-1-5	3,370.1	98-409	159.0	
			98-413	149.6	공동개발권장
			98-414	208.2	ð ð/미런 건´ő
			98-415	159.2	
			98-416	160.2	
			98-410	160.1	
			98-411	231.2	
			98-412	178.8	공동개발권장
			98-417	161.3	
			98-418	227.2	
			98-31	292.6	
			98-87	339.7	공동개발권장
			98-88	306.7	00/11/2/20
			98-89	160.7	
			98-90	152.8	
			98-91	273.4	
			98-92	270.0	공동개발권장
			98-436	131.4	
			98-488	154.3	
			98-93	141.1	
			98-370	141.1	
3-1-6	3-1-6	4,280.6	98-377	153.9	공동개발권장
		_,	98-378	176.8	00 , 220
			98-379	142.8	
			98-380	142.2	
			98-371	140.8	
			98-372	140.8	
			98-373	136.4	
			98-374	140.4	고도하다하하
			98-375	170.7	공동개발권장
			98-376	156.5	
			98-381	138.8	
			98-382	140.0	
			98-383	136.7	

도면	가구	 가구	<b>三</b>	지	2				
번호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98-7	6.8					
0.1.7	0.1.7		98-74	197.4					
3-1-7	3-1-7	778.0	98-75	278.8	공동개발권장				
(1)	(1)		98-76 98-429	32.9					
			98-429	98.4 163.7					
			98-481	162.6					
			98-32	142.3					
			98-82	171.9	공동개발권장				
			98-445	147.6					
3–1–7	3-1-7	1,700.3	98-83	163.8					
(2)	(2)	<b>_,</b>	98-84	155.7	v.v				
			98-85	173.9	공동개발				
			98-515	160.6	권장				
			98-520	276.0					
			98-527	145.9					
			98-128	155.5					
							98-129	312.0	
		1.00.0	98-132	164.5					
0.1.0	0.1.0		98-526	148.8					
3-1-8	3-1-8	1,688.2	98-547	210.0	공동개발권장				
			98-126 98-127	168.2 187.8					
			98-131	190.2					
			98-487	151.2					
			98-27	76.8					
			98-50	431.2					
			98-235	141.0	공동개발권장				
3-1-9	3-1-9	2,004.8	98-490	193.8					
0 2 0		2,001.0	98-491	173.0					
			98-236 98-237	504.9 319.2	공동개발권장				
			98-494	164.9	중동개월전상				
			98-51	438.8					
			98-238	129.7	고도레비크				
			98-522	188.0	공동개발권장				
3-1-10	3-1-10	2,101.1	98-523	167.4					
			98-54	35.0	7 F No. 2 2				
			98-239	645.1	공동개발권장				
			98-240 98-28	497.1 184.2					
			98-28	159.2					
			98-176	165.6					
			98-497	164.9	공동개발권장				
			98-514	156.0					
3-1-11	3-1-11	2,377.7	98-516	175.0					
			98-177	333.1	공동개발권장				
			98-178	334.5	ㅇㅇ/미란 단 ㅎ				
			98-179	168.4	7 - 20 - 20				
			98-180	361.3	공동개발권장				
							98-525	175.5	

두면	가구	 가구	필	지	-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29	154.0	
			98-398	159.0	
			98-403	174.5	고도게바고기가
			98-404	158.5	공동개발권장
			98-405	156.6	
			98-406	160.0	
			98-399	161.5	
			98-400	158.1	
			98-401	195.8	고도에버리기
			98-402	164.1	공동개발권장
			98-407	160.0	
			98-408	159.3	
			98-169	112.1	
			98-170	232.7	
			98-171	232.7	
			98-172	72.2	고도게바다기가
2 1 10	2 1 10	19 5 402 0	98-173	121.1	공동개발권장
3-1-12	3–1–12	5,492.0	98-183	128.3	
			98-184	173.0	
			98-528	128.3	
			98-174	225.5	
			98-187	226.3	
			98-188	237.2	
			98-189	229.1	공동개발권장
			98-190	128.0	
			98-191	233.0	
			98-566	101.1	
			98-192	145.3	
			98-193	127.3	
			98-194	120.9	
			98-479	163.3	공동개발권장
			98-480	181.4	
			98-562	92.6	
			98-563	119.2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 <del>-</del>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384	141.3	
			98-390	153.8	
			98-391	174.5	
			98-392	141.1	고드레비크기
			98-393	137.9	공동개발권장
			98-394	139.8	
			98-395	140.8	
			98-40	137.9	
			98-385	140.9	
3-1-13	3-1-13	3,209.9	98-386	138.6	
			98-387	138.3	
			98-388	175.5	공동개발권장
			98-389	154.5	
			98-396	140.7	
			98-397	141.7	
			98-151	347.4	
			98-152	392.3	고드레비키키
			98-153	148.1	공동개발권장
			98-564	124.8	
			98-37	361.2	
			98-133	187.5	
			98-134	101.0	
			98-135	139.6	공동개발권장
			98-472	177.6	
			98-473	122.0	
			98-553	203.5	
			98-474	39.6	
3-1-14	3-1-14	3,127.0	98-136	109.8	
3-1-14	J-1-14	3,127.0	98-137	201.2	
			98-138	381.6	공동개발권장
			98-475	134.4	
			98-476	174.9	
			98-561	200.7	
			98-141	166.5	
			98-477	145.1	공동개발권장
			98-478	116.5	0 0/미란단 0
			98-517	164.3	

도면	가구	가구	필	지	ul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위치	면적(m²)	비고
			98-43	48.7	
			98-48	293.9	
			98-55	179.9	
			98-207	152.5	공동개발권장
3-1-15	3-1-15	2,448.6	98-208	291.6	
			98-209	61.6	
			98-210	428.9	
			98-211	498.0	고드레비크기
			98-212	493.5	공동개발권장
			98-42	15.1	
			98-47	308.5	
			98-202	36.3	공동개발권장
			98-203	273.8	००/॥ च त्र
3-1-16	3-1-16	1,614.6	98-204	154.6	
			98-483	151.6	
			98-205	161.8	
			98-206	352.4	공동개발권장
			98-484	160.5	
			98-200	397.7	공동개발권장
			98-201	605.0	88개월 년/8
3-1-17	2 1 17	3-1-17 1,855.8	98-197	318.1	
3-1-11	2-1-11		98-198	179.2	고드레비크리
			98-485	171.6	공동개발권장
			98-486	184.2	
			98-123	516.2	고도에비기기
0 1 10	0 1 10	1 101 4	98-125	70.5	공동개발권장
3–1–18	3-1-18	1,131.4	98-38	218.5	
			98-124	326.2	공동개발권장
			98-56	498.3	7 F 101 -1 -1
			98-482	187.7	공동개발권장
			98-297	511.0	-
			98-298	511.2	7 F -1\n1 →1 →1
			98-299	511.6	공동개발권장
0.01	2.0.1	4.000.0	98-44	514.1	고드레비크리
3-2-1	3-2-1	4,283.0	98-287	507.1	공동개발권장
			98-288	128.6	
			98-289	523.9	
			98-510	130.8	공동개발권장
			98-511	130.4	
			98-512	128.3	

도면	가구	가구	획지/필지		-3	
번호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m²)	비고	
3-2-2			98-302	437.0		
			98-303	274.1		
			98-312	146.7	공동개발권장	
			98-313	325.3	0 0 11 2 2 0	
		4,039.5	98-529	127.1		
	3-2-2		98-304	270.8		
			98-305	254.1		
			98-306	266.6		
			98-309	243.4	공동개발권장	
			98-310	260.2		
			98-311	272.6		
			98-291	130.6		
			98-292	368.4		
			98-293	150.2		
			98-504	150.5	공동개발권장	
			98-505	191.4		
			98-521	170.5		
			98-314	296.3		
			98-315	278.2	공동개발권장	
			98-323	300.0	0 0 / 11 2 12 0	
			98-316	277.9		
	3-2-3	2 202 7	98-317	277.8		
3-2-3			98-321	263.9	공동개발권장	
3-2-3		3,262.7	98-322	265.4		
			98-11	480.4		
			98-318	277.8		
			98-320	263.7	공동개발권장	
			98-345	281.3		
			98-350			
				314.3	고도레바다기기	
	3-2-4	1,901.9	98-351 98-356	263.0 295.3	공동개발권장	
2 2 4						
3-2-4			98-352	267.8		
			98-353	234.7	공동개발권장	
			98-354 98-355	254.5 272.3		
	3-2-5	840.1	98-357	179.8 264.4		
205			98-358		고도레바다	
3-2-5			98-359	158.8	공동개발권장	
			98-538	135.2		
			98-551	101.9		
4-1-1	4-1-1	504.9	98-441	504.9	-	
5-1-1	5-1-1	1-1 25,809.9	106-5	229.6		
			106-6	1,347.3		
			106-7	8,617.3	E 내리 워크스	
			106-8	11,820.6	특별계획구역	
			106-10	327.2	(갑문친수공간)	
			106-11	1,233.6		
			106-12	552.0		
			125-5	1,682.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지		ul
			위치	면적(m²)	비고
6-1-1	6-1-1	49,487.2	102-2	29280.2	
			102-11	13184.5	특별계획구역
			102-32	1201.4	(이민사박물관)
			125	5821.1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에 관한 결정 (변경 없음)
  -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1-1	북성동1가 98-3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2-1-1	북성동1가 98-8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2m, 3m (결정도 참조)	
2-1-2	북성동1가 98-52 일대 (결정도면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532 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1-3	(결정도면	높 이	○ GL+30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10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1-4	(결정도면	높 이	○ GL+34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434 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1-5	30-434 글대     (결정도면	높 이	○ GL+42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444 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1-6	90-444 월대     (결정도면	높 이	○ GL+42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북성동1가 98-443 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1-7	30 443 필대 (결정도면	높 이	○ GL+42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2-2-1	북성동1가 98-26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2-2-2	북성동1가 98-225 일대 (결정도면 참조)	98-225 일대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4		
		건폐율	○ 70% 이하		
2-2-3	북성동1가 98-227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০ 70% াই		
2-2-4	북성동1가 98-524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2-2-5	북성동1가 98-507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5	
		건폐율	○ 70% 이하	
2-2-6	북성동1가 98-507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북성동1가 98-59 일대 (결정도면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2-3-1		높 이	○ GL+42m 이하	
	참조)	주차진입 공동출입구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공동개발시 미적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l	
		건폐율	○ 70% 이하	
2-4-1	북성동1가 98-62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8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4m,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	북성동1가 98-569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2	북성동1가 98-78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3	북성동1가 98-25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4	북성동1가 98-493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5	북성동1가 98-101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6	북성동1가 98-436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7	북성동1가 98-16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2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7 (2)	북성동1가 98-76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북성동1가 98-487 일대 (결정도면	건폐율	○ 70% 이하	
3-1-8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34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9	북성동1가 98-27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0	북성동1가 98-54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1	북성동1가 98-175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3-1-12	북성동1가 98-172 일대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 98-29, 98-398, 98-403, 98-404, 98-405, 98-406, 98-399, 98-400, 98-401, 98-402, 98-407, 98-408, 98-169, 98-183, 98-170, 98-171, 98-172, 98-184, 98-173, 98-528 ○ 3-4-12 GL+46m 이하 - 98-174, 98-187, 98-188, 98-189, 98-190, 98-191, 98-566, 98-192, 98-193, 98-194, 98-479, 98-480, 98-562, 98-563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3	북성동1가 98-155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4	북성동1가 98-474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5	북성동1가 98-43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6m 이항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6	북성동1가 98-42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6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7	북성동1가 98-485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6m 이하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3	
		건폐율	○ 70% 이하	
3-1-18	북성동1가 98-125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4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3-2-1	북성동1가 98-511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20-1	건폐율	○ 70% 이하	
3-2-2	북성동1가 98-529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건폐율	○ 70% 이하	
3-2-3	북성동1가 98-322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기준 350% 이하 ○허용 600% 이하 ○상한 800% 이하	
	(일 6고 C 참조)	높 이	○ GL+50m 이하	
	<u>, , , , , , , , , , , , , , , , , , , </u>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북성동1가	건폐율	○ 70% 이하	
3-2-4	98-353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C2	
	북성동1가	건폐율	○ 70% 이하	
3-2-5	98-551 일대 (결정도면	용적률	○ 기준 350% 이하 ○ 허용 600% 이하 ○ 상한 800% 이하	
	참조)	높 이	○ GL+50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D	
	북성동1가	건폐율	○ 60% 이하	
4-1-1	98-441	용적률	○ 300% 이하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22m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월미문화의거리변 3m (결정도 참조)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북성동1가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5-1-1	106-8 일대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결정도면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참조)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기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용 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북성동1가	건폐율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6-1-1	102-2 일대	용적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결정도면 참조)	높 이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건축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기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에 따름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98-39 일위	용적률	○ 540% 이하	
1	(결정도면	높 이	○ GL+24m 이하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용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98-567 일원	용적률	○ 540% 이하	
2	(결정도면	높 이	○ GL+24m 이하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결정도 참조)	
		용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98-16 일원	용적률	○ 540% 이하	
3	(결정도면	높 이	○ GL+22m 이하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결정도 참조)	
		용도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P	
	북성동1가	건폐율	○ 90% 이하	
주차장	98-115	용적률	○ 540% 이하	
4	(결정도면 참조)	높 이	○ GL+24m 이하	
	ц -1-/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외 2m (결정도 참조)	

<sup>※</sup> 건축물의 높이계획과 관련하여 본 지구내 건축 및 개발시는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건축허가 전 협의를 통해 월미RS의 관제범위와 건축물의 상충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차량동선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1, 2-1-1, 2-1-2, 2-2-1, 2-3-1, 2-4-1, 3-1-1, 3-1-2, 3-1-7(1), 3-1-17, 3-2-1, 3-2-2, 3-2-3, 3-2-4, 3-2-5	결정도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주요 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2-1-2, 98-498 차량출입구 제외

# - 주차장 진입 공동출입구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2-1-3, 2-1-4, 2-1-5, 2-1-6, 2-4-1	결정도면	주차장 진입	○ 필지별 개별 개발시 적용 (공동개발시 미적용)	
2-3-1	참조	참조 공·	공동 출입로	○ 필지별 개발시 또는 공동개발시 주차장 진출입 공간을 공동으로 설치
98-255, 98-259, 98-338, 98-339, 98-444, 98-419, 98-285, 68-61	결정도면 참조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구	○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조성시 적용	

# - 대지 내 공지

도면번	را حا	¬ н	-게 중1 - 기 · O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전면 공지	<ul> <li>조성방법</li> <li>- 인도와 접하는 경우나 월미 문화의 거리변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 차도 또는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인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 특별계획구역 S1(1-1-1), 3호 주차장 서측 소로 1-1호선변의 15m 폭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데크 형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며,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계획 수립시 이를 결정</li> <li>- 전면공지 조성시는 인접한 차도 또는 보도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li>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건축물의 지하구조물, 담장, 계단, 화단 등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li> <li>○ 전면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도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li> </ul>
	- E   F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ul> <li>○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가 계획된 대지에서는 주차를 위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조성하여야 하며,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li> <li>○ 조성방법</li> <li>- 결정도에서 정한 위치에 도로에 준하여 포장 등을 하여 조성</li> <li>- 지상부에서 8m 높이까지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주차출 입구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하여야 함</li> <li>○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단, 공동개발이 계획된 일단의 필지 전체가 공동으로 개발되어 맹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부여하지 않음)</li> <li>○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개공	○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수 ○ 공개공지는 민간부문에서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개공지는 지상부에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중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는 교차지점에 설치하도록 함 ○ 조성방법 - 공개공지 조성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함 -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 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공개공지를 조성한 대지는 별도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공개공지의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대지의 조경	<ul> <li>○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적용</li> <li>○수종은 인천시 향토수종을 주 수종으로 하되 계절감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수 있도록 보조식재를 하고, 수경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li> <li>○대지의 조경을 전면도로변 및 가각부에 설치시 용적률 완화 부여</li> <li>○대지의 조경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공행로 공보통	<ul> <li>○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의 실외 또는 실내에 규정된 폭원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함</li> <li>○ 조성방법</li> <li>-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연접대지간 단차가 없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li> <li>-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 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 공간 등 보행통행시 장애가되는 공간과는 차폐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바닥재료 선정 및 포장을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은 캐노피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li> <li>○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옥상 녹화	<ul> <li>옥상녹화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의 인정면적은 옥상녹화 조성면적 가운데 계단탑, 설비면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li> <li>옥상에 녹화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옥상녹화면적의 100분의 50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li> <li>옥상녹화를 조성한 대지는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적률 완화 부여</li> </ul>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녹색 주차장	<ul> <li>○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 되는 곳을 선정</li> <li>○ 잔디는 주차면보다 1~2cm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li> <li>○ 녹색주차장 설치시 설치면적에 의해 용적률 완화 부여</li> </ul>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ul> <li>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권장</li> <li>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li> </ul>
		녹색 건축 인증	<ul> <li>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녹색건축 인증을 권장</li> <li>녹색건축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li> </ul>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l층 바닥 높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는 상업용도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외벽 처리	<ul> <li>○ 벽면처리의 통일성</li> <li>-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조화 유지</li> <li>○개구부 없는 벽면의 처리</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폭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가로노출 불가</li> <li>○개구부</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설치 불가</li> <li>○ 투시벽</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li> <li>○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li> <li>-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li> <li>○ 셔터</li> <li>- 폭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li> <li>○ 지하층 출입구의 설치</li> <li>-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 설치 불가</li> </ul>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옥외 광고물	<ul> <li>옥외광고물</li> <li>돌출간판은 1개 건물에 1줄만 설치하여야 함. 돌출간판의 규격은 건물높이가 1층 이하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1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2m 이내 크기로 제한</li> <li>애드벌룬,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공연간판은 설치를 금지</li> <li>기타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표시방법을 준함</li> <li>건축물의 지번표시</li> <li>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표시</li> </ul>
		색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 및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
대상지 전구역	대상지 전구역	야간 경관 거 <del>추</del> 모	<ul> <li>작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에 신축되는 건물은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li> <li>작 20m 이상 도로에 면하는 신축 또는 재건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조명의 방향은 상향 권장)</li> <li>○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li> <li>○건축물의 형태가 탑상형으로 건축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녹지, 휴게소, 광장 등)가</li> </ul>
		형태	확보 가능토록 건축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가로경관이나
		지붕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경사형 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상기의 건축물 외관에 대한
		1층 전면부 입면 처리	규제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준수 ○ 1층 층고 - 1층의 층고는 인접건물 1층 층고와 10cm 이상 차이를 둘 수 없음 - 단, 인접 건물과 기능상의 차이가 확연하거나 지형상 층고의 통일이 어렵다고 당해 건축위원회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 ○ 외벽면 재료 - 2층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심의시 인접한 건물(좌우 각 3개씩)의 입면색채표본과 대상지 건축물의 1층 전면 색채표본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 개구부 - 1층 전면에는 투시형태의 개구부 설치 권장

### - 지하공간에 관한 계획

위치(대상지)	구 분	계 획 내 용
월미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역	지하층 건축물 용도 불허	<ul><li>○ 지하층 건축물 용도는 지상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용도를 제한</li><li>○ 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내용 변경 시 이에 따름</li></ul>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게재 생략(변경 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5)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 분	계 획 내 용
		개	발방향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참고) ○개발방향 - 대규모 이전적지에 대해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거점개발 - 숙박·위락·문화 복합기능 부여
S1	1-1-1, 완충 녹지1	용도	허용	<ul>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17호 공장 가운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 단, 인천광역시 조례 제3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건	폐율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용적률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눌	를 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축물 형태	○해안변 건축입면부 차경 확보
			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3m, 소로1-1호선변 15m
		차	량동선	○ 중로1-22호선변 차량출입구 2개소 허용
		주	·차장	○주차장용지 15%이상 의무 확보

- 주)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등)
  - 3. 1호 완충녹지는 특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부여

도면	6) <del>5</del> )	7	н	계획	내 용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기정	변경	
		개발방향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이후 본 지침 적용 가능 - 단기방안: 매립목적 범위 내에서 해양박물관 설치	용도지역 변경 이후 본 지침 적용 가능 - 단기방안: 매립목적 범위 내에서 해양박물관 설치 - 장기방안: 해양박물관과 연계한 관광	
S2		<del>성</del> 나	허용		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단, 지하층에 대해서는 세부계획 수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 및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지하층의 재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용도를 변경할 수 있음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 및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지하층의	
		건피	톄율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 30% 이하	
		용경	적률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 100% 이하	
		노	०]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 GL+38m 이하 (건축허가 전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축선 	○건축한계선 - 중로변 5m, 해안변 5m	○ 건축한계선 - 중로변 5m, 해안변 5m	
		<i>공</i> 보행	공 통로	○평화의 등대 연계	○ 평화의 등대 연계	

- 주) 1. 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에 투자유치 예정인 "인천해양박물관" 사업계획을 반영
  -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항만공항시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 3.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도시계획과, 도시 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항만공항시설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 - 기타에 관한 결정(신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대내 공계															전면 공지	<ul> <li>○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li> <li>○도로변 5m, 해안변 5m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을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지정하고 긴급차량 및 보수차량 외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함</li> <li>○조성방법</li> <li>- 인도와 접하는 경우나 월미 문화의 거리변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li> <li>- 전면공지 조성시는 인접한 차도 또는 보도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단, 이미 조성된 상태 및 현상설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조성하여 보행이 단절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성)</li> <li>-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건축물의 지하구조물, 담장, 계단, 화단 등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단, 이미 조성된 상태 및 현상설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조성하여 보행이 단절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성)</li> </ul>
S2	5-1-1		공개 공지	○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수 ○ 공개공지는 지상부에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중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는 교차지점에 설치 ○ 조성방법 - 공개공지 조성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함 -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 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공개공지의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의함														
					대지의 조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적용 ○수종은 인천시 향토수종을 주 수종으로 하되 계절감과 지역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식재 조성 ○대지의 조경을 전면도로변 및 가각부에 설치 ○대지의 조경 설치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												
			공 보 통	<ul> <li>○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의 실외 또는 실내에 규정된 폭원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조성</li> <li>○ 조성방법</li> <li>-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연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연접대지간 단차가 없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설치할 수 없음 (단, 이미 조성된 상태 및 현상설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조성하여 보행이 단절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성)</li> <li>-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 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설치하며, 건축물의 부속되는 주차장 및 서비스 공간 등 보행통행시 장애가 되는 공간 과는 차폐하여 통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li> <li>-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바닥재료 선정 및 포장을 하고,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 공보행통로와 접하는 건축물은 캐노피를 설치</li> <li>○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는 경미한 변경에 의함</li> </ul>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옥상 녹화	<ul> <li>○ 옥상녹화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의 인정면적은 옥상녹화 조성면적 가운데계단탑, 설비면적, 대지안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함</li> <li>○ 옥상에 녹화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옥상녹화면적의 100분의 50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li> <li>○ 옥상녹화를 조성한 대지는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적률완화 부여</li> </ul>
		환경 친화 적 건축 물에	녹색 주차장	○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 되는 곳을 선정 ○ 잔디는 주차면보다 1~2cm 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 녹색주차장 설치 시 설치면적에 의해 용적률 완화 부여
		<sub>교</sub>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획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
			녹색 건축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 ○ 녹색건축 인증시 인증 등급별 용적률 완화 부여
S2	5-1-1		1층 바닥 높이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되는 상업용도 건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10cm 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기타 에 관한 계획		외벽 처리	<ul> <li>● 벽면처리의 통일성</li> <li>- 현상설계결과에 따라 해양박물관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벽면재료 선정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과 의장, 재료, 색채 등에 있어 조화를 유지</li> <li>○ 개구부 없는 벽면의 처리</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폭 1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가로노출 불가</li> <li>○ 투시벽</li> <li>-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예외</li> <li>○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li> <li>-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li> <li>○ 셔터</li> <li>- 폭 15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li> <li>○ 지하층 출입구의 설치</li> <li>-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된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목적 이외의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출입구에는 지붕구조물 설치 불가</li> </ul>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옥외 광고물	<ul> <li>○ 옥외광고물</li> <li>- 돌출간판은 1개 건물에 1줄만 설치하여야 함. 돌출간판의 규격은 건물높이가 1층 이하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1m 이내로 하고,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1m 이내, 세로 2m 이내 크기로 제한</li> <li>- 애드벌룬,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공연간판은 설치를 금지</li> <li>- 기타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표시방법을 준함</li> <li>○ 건축물의 지번표시</li> <li>-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 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번 표시</li> </ul>
		기타	색채	○ 색채 경관은 한국표준색계인 먼셀시스템(Muncell system)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윌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색채경관 문화복합권역 가이드라인을 준용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행									
		기다 에 관한 계획	야간 경관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의 내용 준용									
S2	5-1-1	1	건축 물 형태	○건축물의 형태는 현상설계 결과에 따르며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녹지, 휴게소, 광장 등)가 확보 가능토록 건축									
			1층 전면 부 입면 처리	<ul> <li>○ 건축물 외관에 대한 규제사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준수</li> <li>○ 1층 층고</li> <li>- 1층의 층고는 인접건물 1층 층고와 10cm 이상 차이를 둘 수 없음</li> <li>- 단, 현상설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특성상 층고의 통일이 어렵다고 당해 건축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li> <li>○ 외벽면 재료</li> <li>- 2층 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건축심의시 인접한 건물(좌우 각 3개씩)의 입면색채표본과 대상지 건축물의 1층 전면 색채표본을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li> <li>○ 개구부</li> <li>- 1층 전면에는 투시형태의 개구부 설치</li> </ul>									
		지하 공간 에 관한 계획	지하 층 건축 물 용도 불허	○ 지하층 건축물 용도는 지상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용도를 제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개발방향 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개발방향 -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 계획시설 변경(월미공원에서 제척) 후 적용 가능 - 단기방안: 용도지역 변경 전까지 근린공원 유지 - 장기방안: 해양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거점 개발 유도	
S3	6-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 (주차장 제외)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해상교통관제센터 협의전제)	
				○ 건축한계선 - 중로변 5m	
			·보행 ·로	○ 이민사박물관역~이민사박물관 연계	

- 주) 1.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 2. 상기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결정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정책관, 국민안전처 등)
  - 3. 특별계획구역 내 이민사박물관은 존치

### ○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S2	중구 북성동1가 106-8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현상설계 건축계획 반영

#### 6)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u> </u>	완화기준	비고		
공동개발		획지계획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 획지계획 준수시 적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공동개발 적용 면적 ÷ 총 공동개발 계획 면적) × 0.2			
건축물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준수시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연면적 ÷ 건축연면적) × 0.2	○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용무	6.9.97	1층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1층 권장용도 연면적 ÷ 1층 건축연 면적) × 0.2	○ 1층 연면적 30% 이상시 인정 ○ 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		
ell al al a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a	○필로티 a=1.2, 개방형 a=2.0		
대지내 · 공지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	위치 및 규모 준수 · 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필로티 a=1.2, 개방형 a=2.0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0	-		
대지의 조경			○기준용적률 × 0.025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3	○ 법적 조경면적 제외		
환경	녹색건축	인증시	○ 최우수: 기준용적률 × 0.12 ○ 우수: 기준용적률 × 0.08 ○ 우량: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적용		
친화적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적용		
	녹색 주차장	조성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주차 및 차량동선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구	출입구 조성 · 개방시	○기준용적률 × 0.1	○결정도상 적용 대지		
	부설 주차장 확보	법정주차대수 15% 이상 추가 확보시	○기준용적률 × 0.1	-		

- 주) 1.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계획수립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 2. 가구단위 공동개발시는 별도의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
  - 3.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4. 공동개발 면적이란 권장하고 있는 공동개발계획내에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선택적 공동개발을 말함
  - 5.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 6.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전면공지가 공동주차진출입로와 중복되어 공동주차진출입로로 조성할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함

#### ○ 가구단위 공동개발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완화기준	비고		
공동개발		가구 전체 공동개발시	○기준용적률 × 0.2	○ 가구내 전체필지를 공동개발시에만 적용		
건축물 용도		주거복합 건축물 개발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 연면적 ÷ 건축연면적) × 0.2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_ ,_ ,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의무면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a	○ 공람시: 필로티 a=1.2, 개방형 a=2.0		
	건축 한계선	전면공지 조성시	-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	전면가로 및 가각부 조성시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3	○ 법적 조경면적 제외		
환경	녹색건축	인증시	○ 최우수 : 기준용적률 × 0.12 ○ 우수 : 기준용적률 × 0.08 ○ 우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적용		
진화적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	○1등급 :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 기준용적률 × 0.06 ○3등급 : 기준용적률 ×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적용		
	녹색 주차장	조성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2	-		
주차 및 차량 동선	ㅑ   주차장   15% 이상  ○기준용적률 × 0.1		_			

- 주) 1. 가구단위 공동개발시는 본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만 적용하며 일반적 인센티브를 중복적용하지 않음
  - 2. 허용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3.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전면공지가 공동주차진출입로와 중복되어 공동주차진출입로로 조성할 경우 해당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 적용함
    -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이내

# ※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용 도						
C1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허 <del>용용</del>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2	허 <del>용용</del> 도	<ul> <li>○ 가구단위 공동개발시</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16호 위락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구분	용 도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3	허 <del>용용</del> 도	<ul> <li>○가구단위 공동개발시</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제1호 단독주택(단, 기존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받은 연면적에 한하여 허용)</li> <li>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제14호 업무시설</li> <li>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제16호 위략시설</li> <li>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4	허 <del>용용</del> 도	<ul> <li>○가구단위 공동개발시</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단, 주거복합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li> <li>○가구단위 공동개발 이외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li> <li>-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li> <li>-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li> <li>-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li> <li>- 제16호 위락시설</li> <li>-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li> <li>- 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ul>
	권장용도	<ul> <li>○ 1층 권장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전층 권장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구분		용 도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C5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해당사항 없음						
D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가운데 나목 관광숙박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권장용도	○ 전층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모든 건축물(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주차장						
P	허용용도	○ 해당사항 없음						
	권장용도	○ 해당사항 없음						
	불허용도	○ 해당사항 없음						

#### 7)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없음)

- 1. 공개공지의 위치 ·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2. 대지의 조경 위치 ·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 3.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4.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 5.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6.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변에서의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게재 생략(변경 없음)
- 라.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중구청 도시개발과(1880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6. 28.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
-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8-53번지 일원
-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기정							변 경				
도면	E면 가구 가구		가구 필지		מו	도면	가구	가구	필지		ul –	
번호	번호	면적(m²)	위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98-250	180.4					98-250	180.4		
			98-251	327.4	공동개발				98-251	327.4	공동개발	
			98-263	167.9	권장				98-263	167.9	권장	
			98-270	330.9	건경				98-270	330.9	편'8	
			98-271	331.2					98-271	331.2		
			98-252	330.9					98-252	330.9		
0 1 0	0 1 0	3,888.9	98-253	329.6	공동개발 권장	0 1 2	2-1-3	3,888.9	98-253	329.6	공동개발 권장	
2-1-3	2-1-3		98-254	325.9		2-1-3			98-254	325.9		
			98-255	337.5		_			98-255	337.5		
			98-220	99.2					98-220	99.2	공동개발	
			98-426	143.8	공동개발				98-426	143.8	공동개월 권장	
		ı	98-427	155.4					98-427	155.4	건경	
			98-428	231.7	권장				98-428	231.7	공동개발	
			98-532	597.1					98-532	597.1	권장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 구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1-3	98-220		
	98-426	○ 공동개발 권장변경 기정: 98-220,426,427,428,53(공동개발권장)	○ 동일 소유자 필지를 고려한
	98-427		공동개발 권장 변경을 통한 효율
	98-428	변경: 98-220,426,427(공동개발권장) 98-428,532(공동개발권장)	적인 토지이용
	98-532	33 125,332() 07HE E 07	

4. 지형도면: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구보게재 생략)